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해양경찰의 교육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ducation system Improving of Korea coast guard



2016년 12월 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항만물류학과

음진경

본 논문을 음진경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위원장 안 기 명 (인)

위 원 남 기 찬 (인)

위 원 신 용 존 (인)

2016년 12월 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목 차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2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2

2. 이론적 고찰

- 2.1 교육훈련의 목적과 필요성 3
- 2.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의 의의 5
- 2.3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의 종류와 방법 7
- 2.4 선행연구 검토 9

3. 해양경찰 교육 현황

- 3.1 해양경찰 조직 및 인력 11
 - 3.1.1 해양경찰의 연혁 11
 - 3.1.2 해양경찰 조직 11
 - 3.1.3 해양경찰의 인력 12
- 3.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조직 및 기능 13
- 3.3 교육시설 현황 및 분석 15
 - 3.3.1 훈련시설 15
- 3.4 교육과정 현황 및 분석 17
 - 3.4.1 교육과정 현황 17
 - 3.4.2 신입과정 17
 - 3.4.3 기본과정 24
 - 3.4.4 전문과정 29
 - 3.4.5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및 분석 32
- 3.5 함정 및 안전센터 교육훈련 33

4. 외국 해양경찰 교육 제도	
4.1 미국 해양경비대	35
4.1.1 해양경비대의 조직	35
4.1.2 해양경비대의 임무	37
4.1.3 해양경비대의 교육 및 훈련제도	38
4.2 일본 해상보안청	42
4.2.1 일본 해상보안청	42
4.2.2 일본 해상보안청의 교육제도	45
4.3 중국 해경국	50
4.3.1 중국 해경국의 조직도 및 업무	50
4.3.2 중국 해경국의 교육제도	51
4.4 시사점	53
5. 해양경찰 교육시스템 개선 방안	
5.1 대내·외적 여건 변화 및 필요성	56
5.1.1 대외적 요건	56
5.1.2 대내적 요건	59
5.2 해양경찰 교육시스템 개선	60
5.2.1 신임 과정의 체험형 과목 확대	60
5.2.2 현장지휘역량 강화	62
5.2.3 내부 전문가 양성	65
5.2.4 교육 교류 운영 확대	67
5.2.5 교육 시설 확충	70
6. 결 론	71
참고문헌	74

List of Tables

Table 1	해경 인력 현황	13
Table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주요시설	15
Table 3	교육원의 훈련시설의 종류 및 규모	16
Table 4	신임과정 단계별 주요내용	18
Table 5	비간부 신임과정(공통) 커리큘럼 분류	20
Table 6	신임(간부후보)과정 커리큘럼 분류	21
Table 7	신임과정 교육과정 비교	24
Table 8	기본과정 과정별 기간 및 목표	25
Table 9	경사 기본과정의 구성	26
Table 10	경위 기본과정의 구성	27
Table 11	경감 기본과정의 구성	28
Table 12	경정 기본과정의 구성	28
Table 13	전문과정의 커리큘럼	30
Table 14	현장근무시 도움 되는 20과목 순위	32
Table 15	비간부(해상보안직원) 교육과정	48
Table 16	해상보안관 및 일반직원 재연수과정	49
Table 17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선진국 교육기관의 교육체제 비교 ..	55
Table 18	독도 근해 일본순시선 출현 현황	57
Table 19	이어도 해역 중국국가세력 출현 현황	59
Table 20	신임과정 졸업생 대상 확대 희망 상위 10과목 조사 결과	61
Table 21	리더십 강화 교육 구분	64
Table 22	현 운용중인 한·일구조사 임무구분	66
Table 23	미국 연안경비대 사관학교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	69

List of Figures

Fig. 1	해양경비안전본부 조직도	12
Fig.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조직도	14
Fig. 3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신규임용자 과정	17
Fig. 4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기본과정 구성	25
Fig. 5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전문과정 구성	29
Fig. 6	함정 및 해경안전센터 훈련	34
Fig. 7	미국 해양경비대 조직도	36
Fig. 8	해양경비대(USCG)의 다중 임무	37
Fig. 9	해양경비대(USCG) 교육 제도	38
Fig. 10	해양경비대(USCG) 신입교육제도	40
Fig. 11	미국 사관학교(Coast Guard Academy)의 학부 및 전공	42
Fig. 12	일본 해상보안청(日本海上保安庁)의 주요업무	43
Fig. 13	일본 해상보안청(日本海上保安庁) 조직도	44
Fig. 14	해상보안청의 교육제도	46
Fig. 15	해상보안대학 전공구분	46
Fig. 16	비간부(해상보안직원) 교육과정	47
Fig. 17	중국 해경국의 주요 업무	50
Fig. 18	중국 해양국 조직도	51
Fig. 19	리더십 교육 강화 프로그램 전환	64
Fig. 20	구조 관련 내부 전문가 양성 국내·외 사례	67

A study on Education system Improving of Korea coast guard

Eum, Jin Kyoung

Department of Port Logistic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As the social awareness of safety has risen since the sinking ship accident in 2014, the Korea coast guard has been organized by the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to form a systematic and integrated organization for Marine disaster. It is also emphasizing its mission as a rescue force in the ocean, such as the transfer of port vts from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For the case of Korea, which is surrounded by sea on three sides, there are many disputes with its neighboring countries and demand for ocean leisure and tourism has been increasing with increasing national income. To get prepared for such demand in the future, the workload of marine police shall be well-planned and managed by allocating appropriate resources for each task.

Maritime police should develop as a comprehensive body with strong mental strength, physical strength and specialized skills, which should be backed up by individual capacity building.

The 9-month(or 1-year) course for newly recruited police officers consists of

parts of training, which are basic fundamentals, physical strength, practical activities, on-the-job training. However, it is hard to train them about critical sectors such as fleet management, maritime security, information investigation, emergency secure service, and marine pollution response and so on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This means that it is hard to finish the specialty training for that training course.

In some countries such as USA, China, Japan, marine security organizations already have their own training institutes and there is a system which recruits and fosters young people out of high schools who have a sense of duty, loyalty, and mettle. This implies that all-in-one training of strong physical strength, willpower, and sense of duty is now being with an infusion of new blood of youthful seamen. In addition, it is essential to take courses of both basic fundamentals for marine police officers such as law and sci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pecialized training for missions in the ocean such as fleet management, marine rescue, and foreign languages.

In this paper, new staff training over a short period of time will be how to operate And it is examined for how they should be changed in order to improve business performance of existing staff.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해양경비안전본부(舊 해양경찰청)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재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조직을 구성하고자 국민안전처 산하에 구성되어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VTS를 이관받는 등 해양에서의 구조 세력으로써 그 임무와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야말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하고, 그것은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해양세력은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점이 인식해야 할 것인데, 특히 절대 강국들인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 역시 적절한 수준의 해양세력의 확보를 통해서만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해양경찰은 애초 치안세력으로써 선박의 무장력 중심으로만 논의가 되는 경향이 존재하나 실제로 해양경찰은 선박 이외에 첨단 통신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정보집단으로서 장기간의 세력 양성이 필요한 조직이다. 그 동안 해양경찰은 외부적인 세력 확대에 기치를 가해왔고, 이 부분은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중국과 일본의 해상세력과의 경쟁 구도 하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세와 더불어 해양 주권과 해양 안전의 수호자로서 해양경찰은 조직의 구성원의 자질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해양경찰은 그야말로 바다 사나이를 넘어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종합체로써 발전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기반에는 해양경찰 개개인의 역량향상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국익의 차원에서 해양경찰은 어업지도, 해상관련 선박 입·출입, 재해재난구조 등과 같은 각종 대민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데, 특히 긴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지휘통솔이 되도록 리더십 및 전문교육을 강화시키며 더불어 기능과 실무 중심의 젊은 전문 인력을 육성해 강하고 사명감 높은 해양경찰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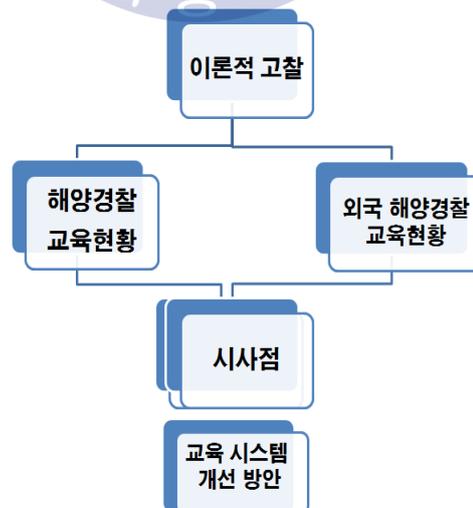
1.2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고도화된 기술 집단이면서도 경찰기관이자 구조능력이 더욱 강조되는 해양경찰에게 교육 및 훈련 등을 강화시키기 위해 해양경비안전교육원(舊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향후 어떻게 변해야하고 무엇을 더 강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는 경찰기관의 교육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제3장에서는 해양경찰의 연혁과 조직구조를 간단히 살펴본다. 또한 해양경찰의 교육현황을 통해 해양경찰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신입직원의 양성 과정 등도 파악해본다.

제4장에서는 해외 Coast Guard의 기관별 조직 및 인력양성 체계를 점검하는데, 크게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해상치안기관들을 일괄 분석한다. 이미 이들 주요국들은 자체 대학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어 젊은 해양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제5장에서는 해양경찰의 대내적 여건과 대내적 여건을 확인하고 현재 교육원의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해 해양경찰에 대한 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전략을 구성했다. 더불어 구조능력 역량으로 해양경찰의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고 해상치안 기관으로서의 궁지와 전문성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전략을 포괄했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21 교육훈련의 목적과 필요성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조에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공무원 조직의 능률을 체계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경찰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공무원 교육훈련의 목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업무활동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분석과 해결을 통해 그 활동의 생산성을 신장하는 데 있다.

둘째, 교육을 통해 공무원은 자기조절의 능력을 함양하고 조직 활동에 필요한 규칙과 협동심을 배양함으로써 조직 내의 지시나 통제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교육훈련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기연찬과 경력신장의 기회를 확보 할 수 있다.

넷째, 교육을 통한 이론과 체험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처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섯째, 교육은 업무변동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그에 따른 결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1)

아울러 경찰공무원은 교육활동을 통하여 민주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충성심과 성실성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직업인으로서 성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정은 조직 구성원과 법률 위반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인간성 회복 교육 또한 중요한 교육목표로 삼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함양하고 오랜 시간 자신의 직무에 헌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에 대한 높은 소명의식을 배양하는 것도 당위적인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함이다.

1) 신현기, 『경찰인사관리론(제3판)』 (법문사, 2012), pp.186.

경찰이 경찰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념과 가치관에 대한 자신의 사고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에 대한 전문화와 기술혁신에 따른 행정 환경의 급속한 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현실과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우리나라 복지수준에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직무능력과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또한 경찰사회의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상위 직급으로 승진 할 때에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고 급속한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정보화 학습을 확대하고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경찰교육훈련은 특수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된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2)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과정에서부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축적해야하며, 소질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임무를 부여하여 조직의 신축적인 변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우수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경찰 공무원으로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급변하는 사회와 과학기술의 급진적인 발달에 따른 각종법령의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직무를 효과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감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질을 개발 하여 경찰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으며, 내부인력의 신축적 배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교육훈련은 자기의 능력향상에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아개발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문화·다양화된 각종 사회 병리현상과 지능화되고

2) 신현기, 『경찰인사관리론(제3판)』 (법문사, 2012), pp.185

과학화되는 범죄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3)

오늘날 높아진 시민의식은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민주화된 경찰공무원의 자질과 위상은 강력히 요구된다.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거대한 규모, 정치적 민주화의 이행, 급속히 변화된 사회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은 전문화되고 특수화된 업무의 역량을 기르고 전문지식 및 기술을 배양해야 하며, 자동화 및 컴퓨터의 첨단장비의 운영체계에 능숙해야 하고, 국제적 감각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다. 4)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찰교육훈련은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현장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가치관을 발전시킴으로써 자기성장과 자아 실현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조 될 수 밖에 없다.

2.2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의 의의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은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 “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교육훈련이 전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설치·운영”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6조 교육훈련실시의 의무사항 제1항에는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경찰공무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과 교육순기에 따라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하여 교육훈련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이 지속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훈련은 “조직에서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단련시키는 동시에 올바른 태도에 대한 변화를

3) 김종수, 『자치경찰의 신규 임용 방안에 관한 연구』(계명대 박사학위 논문, 2007) pp.61.

4) 이황우 외 2인, 『경찰인사행정론(제4판)』(법문사, 2014), pp.144 - 146.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칭 훈련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의 파수꾼으로서 행정업무에 대한 목표를 보다 효율적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부합한 지식과 기술을 공무원들에게 지원하고, 더불어 바람직한 경찰정신과 태도 및 가치관을 확립하여 국민들에게 봉사자라는 개념으로 하는 합리적인 교육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5)

Nigro & Demarco(1979)에 의하면 예전에는 교육훈련의 개념을 협의로 이해하고 판단하여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용이한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시대의 흐름이 변화함에 따라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교육훈련의 개념을 정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6)

Tickner(1950), Patten, Jr(1970)는 교육훈련을 교육과 훈련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먼저 교육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훈련은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과 지식을 습득한다고 주장하였다.7)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시의 경찰국장인 오거스트 볼머(August Vollmer)는 경찰공무원의 자격 요건으로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 삼손의 체력, 욥의 인내, 모세의 지도력, 착한 사마리아인의 친절, 알렉산더 의 전략 , 다니엘의 성실, 링컨의 외교, 나사렛 목수의 관용, 그리고 자연과학, 생물학, 사회과학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 ” 하며, 이러한 자질과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야 훌륭한 경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 경찰교육은 인체 내에 잠재되어 있는 자질과 능력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종합적 내용 보다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부서에 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지 못할 때나 그에 대한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자신의 자질과 부족한 능력을 파악하여 직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경찰교육훈련에 대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행정 국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을 교육과 훈련을 분리할 필요 없이 넓은 범위로 교육훈련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이다. 9)

5) 행정학 용어 표준화 연구회, 『행정학 용어사전』, 새정보 미디어

6) 강성철 외 4인, 『새 인사행정론(전정 7판)』 (대영문화사, 2011), pp.295

7) 강성철 외 4인, 『새 인사행정론(전정 7판)』(대영문화사, 2011), pp.296

8) 이창환, 『경찰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 석사학위 논문, 2008)pp.6

유능한 신입경찰공무원을 채용한 후에는 이들로 하여금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기위해 구체적인 인성에 대한 태도와 본인의 직무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지식과 기술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10)

본 연구의 교육훈련에 대한 개념은 “신입경찰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여 맡은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체계적인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2.3 교육훈련의 종류와 방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전문교육훈련기관) 1항에는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육기관으로는 위탁교육훈련과 직장훈련으로 분류하며,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에 위탁교육훈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을 국내·외의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4조 직장훈련은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및 일반지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직장훈련 실시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법」 제17조에는 “경찰청장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동 조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교육 훈련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과

9) 박동서, 『인사행정론(제5전정판)』(법문사, 2001), pp. 21 - 23.

10) 유민봉, 『한국 인사행정론』(박영사, 2005), pp. 215.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조에서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찰의 4가지 교육훈련을 다음과 같이 학교교육, 위탁교육, 직장훈련, 기타 교육훈련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학교교육은 경찰교육기관인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및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둘째, 위탁교육은 「경찰공무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국내·외의 교육기관 등에서 위탁하여 행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셋째, 직장훈련은 경찰기관의 장이 소속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상 업무를 통하여 행하는 훈련을 말한다.

넷째, 기타 교육훈련은 학교나 위탁 및 직장훈련까지의 교육훈련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훈련으로서 경찰기관의 장의 명에 의하거나 경찰공무원 스스로하는 직무 관련 학습·연구 활동을 말한다.

또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에 경찰공무원 교육훈련은 신입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된 자로서 「경찰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 전 신입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신규채용 된 후 신입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사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 된 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교육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둘째, 경정·경감·경위 및 경사(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 31)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경감·경위 및 경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셋째,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총경(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경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를 포함한다)은 기본교육으로 치안정책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교육훈련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또한 여러 단계로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 훈련의 목적과 조건은 교육훈련의 방법을 선택 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며, 지식전달, 기술습득, 태도교정 등 다양한 훈련의 방법 중에서 훈련의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훈련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 방법에 있어서는 정보 전달하는 강의식 교육을 비롯해 현장훈련, 순환보직, 시찰, 견학과 같은 체험식 방법이 있고, 사례 연구, 회의, 분임토의, 감수성훈련, 대집단토의, 역할연기 등의 참여식 방법이 있다. 세부적으로 교육방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의식 방법은 일방적으로 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정보와 내용을 전달하는 강의방법이며 체험·참여식 교육방법은 사례연구, 분임토의, 모의훈련, 역할연기, 순환보직, 기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들을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례연구는 감독자나 관리자의 인간관계와 특정사례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훈련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실제의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이다.

② 분임토의는 교육훈련대상자를 몇 개의 분임으로 편성하여 각 분임별로 동일한 연구 과제를 토의하여 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작성하는 교육훈련 방법이다.

③ 모의훈련은 피교육자가 업무수행 중 앞으로 직면하게 될 어떤 상황을 가상으로 정해 놓고 피교육자가 그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이다.

④ 역할연기(Role - Playing)는 참가자 중 일부가 일정 사례를 그대로 보여주고 나머지는 피교육자가 되어 각 요소들을 비판적 안목에서 평가하는 학습방법이다.

⑤ 순환보직은 일정한 훈련계획 하에서 순차적으로 지식을 교대시킴으로써 지식과 경험을 쌓게 하는 방법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피고용인이 고도의 시야와 기업전체의 직무를 이해하고, 폭 넓은 인간이 되며, 동시에 직무에 대한 경험을 풍부히 하는데 있다.

24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교육훈련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용환(2005)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해양경찰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해 첫째, 교육시기 절차 단계 등 합리적인 교육훈련체계가 설정되어야 하고 획일적이고 정형적인 내용에서 탈피하여 변화하는 국민의 가치를 수용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이 내실화, 그리고 e-Learning, 토론식, 체험식 등 교육기법을 다양화하며 다양한 교육기법을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교육시설 확보 및 우수한 교수요원 양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열(2011)은 해양경찰 교육훈련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교육기간의 연장과 교과과정의 적절성과 인성 감수성 교육 강화 및 교육생에 대한 신분보장과 복지향상, 그리고 교수요원 사기진작을 주장하였다.

노호래(2013)은 신입순경 교육훈련이 해양의 현장에서 범집행과 서비스의 대상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신입순경의 가치관과 직업윤리의식을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해양경찰교육 과정보다 중요하다며 현재의 교육현황을 검토하고, 1948년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앙행정관청으로 설치된 이후부터 65년의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해 온 해상보안청의 교육기관을 비교하여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한 결과 교수요원 우대와 인력의 충원, 그리고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교육훈련이 체계적인 교육훈련 수요조사에 기초를 두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 교육훈련과 조직성과의 연결부족, 타 인사과정과의 체계적인 연계성 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이완희, 문준섭(2013)은 미국 국토안보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의 1790년에 창설된 미 해안경비대(U. S. Coast Guard: USCG)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업무, 교육 등을 비교해보았다. 미 해안경비대는 우리나라의 해양경찰과는 달리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실전에도 참가하기 때문에 그 임무수행의 영역과 무력행사 기준 및 대상에 있어 차이점도 있으나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 해양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김성겸(2015)은 현재 해양경찰의 교육과정(9개월)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신입경찰에게 해양경찰로서 필요한 역량을 모두 교육시키기에는 부족하며 해양경찰 업무특성상 법학·행정학 등경찰관 기본소양 이외에 바다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함정운용·해양구조·외국어 등 전문교육 필수적이고 함정운용 1년과 그 이외 교육 1년을 포함 한 최소 2년간의 교육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제 3 장 해양경찰 교육 현황

3.1 해양경찰 조직 및 인력

3.1.1 해양경찰의 연혁

해양경찰은 1953년 당시 내무부 소속의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이후 1991년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6년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승격되어 2008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전환되었다. 2012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추가 신설되면서 1개 본청, 4개 지방청, 그리고 16개 지방경찰서, 해양경찰학교, 해양경찰연구소, 그리고 정비창으로 구성된 해상치안조직으로 구성되었다.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해양경찰청은 해양경비안전본부라는 이름으로 국민안전처 장관 밑에 차관급 조직으로 흡수된다. 인력은 1만 여명, 예산은 1조여원, 합정은 308척, 그리고 항공기 23대를 갖춘 해상치안조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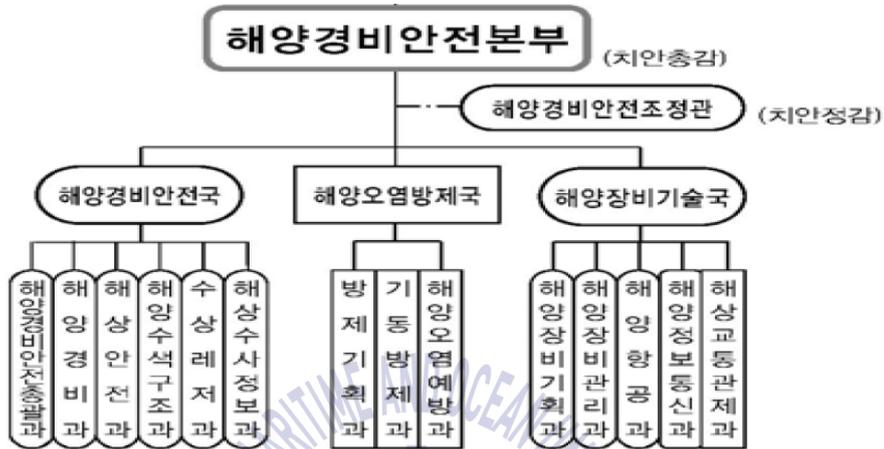
3.1.2 해양경찰 조직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국민안전처 장관 산하에 차관급으로 속해 있으며 차관급으로는 해양경비본부장 외에 국민안전처 차관, 소방안전본부장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차관 및 소방안전본부를 제외한 해양경비안전본부만 살펴보자면 산하에 해양경비안전국, 해양장비기술국, 해양오염방제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해양경비안전국은 해양경비안전총괄과, 해양경비과, 해양수색구조과, 해상안전과, 수상레저과, 해상수상정보과로 구성되어 있다.

장비기술국은 해양장비기획과, 해양장비관리과, 해양항공과, 해양정보통신과, 해상교통관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염방제국은 방제기획과, 기동방제과, 그리고

해양오염예방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경찰의 주요 추진업무는 주권수호, 해양안전관리, 해양범죄 단속, 오염방제, 해상교통관리 등이다.



출처 : 국민안전처 내부자료

Fig. 1 해양경비안전본부 조직도

해양경찰의 현행 조직체계는 국민안전처장관(해양경비안전본부) -> 지방본부 -> 해경서 -> 경비함정 / 해경센터 -> 출장소 -> 대행신고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직체계에서 지방해경의 대부분의 행정기능은 해경안전센터와 출장소가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리적이나 규모가 작은 항구나 포구의 경우 대행신고소를 설치하여 선박의 출항 및 입항의 신고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어촌계장, 마을어장 운영자 및 예비군 중대장 등을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위촉하고 있다.

해경서장이 위촉한 대행신고소장에게는 매월 수당 성격의 행정경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으로 적격자의 위촉이 어렵고, 신분 특성상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되며 생업으로 인한 여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사고나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 실정이다.

3.1.3 해양경찰의 인력

1953년 창설된 이후 해경조직은 줄곧 확대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인력수도 계속해서 증가

해 왔다. 2000년에는 8,514명에서 2008년은 10,977명이었으며 2016년 기준으로 현재 인력은 경찰관 8,110명(72.6%)과 의무경찰순경 2,059명(18.4%), 일반직 1,015명(9%) 등 총 11,18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 해경 인력 현황

합	경찰관	의무경찰순경	일반직
11,184명	8,110명	2,059명	1,015명

출처 : 국민안전처 내부자료

신규채용에 있어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경 업무의 특수성에 기반해 해양에서의 함정 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신규채용 되어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교육 이수와 함께 졸업하면 1년 이상의 함정근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해상에서의 함정생활에 부적응으로 이직하는 해경공무원이 약 10~20%에 해당한다.

9~12개월간의 신입교육을 받은 후 근무여건의 어려움으로 이직을 한다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해경조직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옴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시에는 업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과 함께, 해양경찰 업무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기간 동안의 함정생활 등 해양경찰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3.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조직 및 기능

해양경찰은 1971년 07월 14일 부산에서 해양경찰대 교육대가 설치된 이후 1988년 경찰종합학교 해경학과를 거쳐, 1996년 해양경찰청의 출범으로 1997년 3월 31일 해양경찰학교의 모태인 '직무교육장'을 개설하여 기능별 직무교육을 전담해왔다.

2004년 5월 인천광역시 영종도 소재의 해양경찰청 특공대 건물을 개조하여 해양경찰학교를 개교한 이후 2007년 12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으로 옮겨 교육하다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

10월 전라남도 여수시 오천동으로 이전하였다.

여수 이전과 함께 해양경찰학교에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다가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소속기관이 되면서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바뀌었다. 해경교육원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직원의 교육훈련 및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가 위탁하는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은 치안감(2급 상당)으로 보한다. 산하기관으로는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가 있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조직은 교육원장 아래에 교육지원과, 인재개발과, 교육훈련과, 학생과 등 4개의 과와 1개의 종합훈련지원단, 그리고 별도의 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국민안전처 내부자료

Fig.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조직도

교육지원과, 인재개발과, 교육훈련과, 학생과는 여수에, 종합훈련지원단과 연구센터는 천안에 위치하고 있고, 훈련함 “바다로”는 교육훈련과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 교수요원 및 교관 등을 포함하여 총 18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소속 경찰공무원(의무경찰 포함) 및 해양안전행정공무원의 교육·훈련,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업무 관련 기관·단체 위탁 교육·훈련,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에 관한 연구분석 및 장비·기술 개발 등이다.

3.3 교육시설 현황 및 분석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전남 여수시에 위치하고 있고, 대지 230만㎡, 건물 7만 9천 ㎡의 면적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전문 안전교육시설이다. 교육원 소속으로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에 관한 연구·분석·장비개발 등을 위하여 충남 천안시에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를 두고 있다.

교육원의 주요 시설은 업무시설, 공동주택, 교육 및 연구시설, 체육시설, 훈련시설, 주차시설, 기타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2 해양경비안전교육원 주요 시설

업무시설	본관동(지하1층, 지상9층)
공동주택	생활관(6개동)
교육 및 연구시설	대강당, 중강당, 학생회관/도서관, 식당, 체육관, 수영관, 소화방수훈련장, 해상구조잠수훈련장, 수상레저훈련장, 시뮬레이션훈련장, 기관정비실습장, 재난훈련장, 해양오염방제훈련장, 실내사격장, 시설장비관리동, 무기고, 탄약고, 홍보관, 정문출입통제소 등
체육시설	대운동장, 소운동장, 족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훈련시설	수상레저훈련장(계류장 및 옥외공간), 장애물훈련장, 기초체력훈련장
기타시설	야외교육장, 상징탑, 헬기이착륙장
주차시설	전체 1,018대(법정 716대)-대형 6대, 확장형 192대, 장애인 주차 28대 포함

3.3.1 훈련시설(종합훈련센터)

시뮬레이션 훈련장 1개동과 실습훈련장 7개동으로 구성된 종합훈련센터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핵심적인 시설로서, 실제 함정 및 해상환경을 구현해 놓은 훈련장이며,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훈련을 통해 현업 적응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교육원의 업무 및 교육연구시설은 국내 특정 대학교와 견줄 수 있을 만큼의 규모를 갖추고 있고, 철저한 준비 후에 신축된 시설답게 최신식 설비를 자랑하고 있다.

전문 교육기관으로 신설 이전된 시설답게 교육원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내용에 충실하게 부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생과 교직원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며 잘 구비된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시설인 만큼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한 시설활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세월호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해잠수훈련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설에 대한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현재의 시설과 연계하여 기존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시설 설치가 요구된다.

Table 3 교육원의 훈련시설의 종류 및 규모

구분	수량(규모)	비고
소화방수훈련장 (지상2층)	유류·일반·전기화재(3실), 소화훈련장, 함정기관실 등 모형3개소 방수훈련장(파이프 패칭)	465평
해상구조훈련장 (지상2층)	구조훈련장(15×34×3.8m), 일반수영장(21×25×1.5m), 잠수훈련장(20×21×3/7m)	1,718평
수상레저훈련장 (지상2층)	보트 계류장(4대), 수상레저 면허시험장, 강의실(50인), 창고 등	120평
시뮬레이션훈련장 (지상1층)	조함(3,000톤, 500톤, 120톤, 50톤급), 기관, 함포, 해양오염, 해양경계, VTS	882평
기관정비실습장 (지상1층)	기관 Test Room, 정비실습장, 전기·전자 MCS실습장, Control Room	410평
재난훈련장 (지상4층)	해상재난훈련장, 농연훈련장, 항해·통신실습실	255평
해양오염방제훈련장 (지상1층)	수조(24×33×2.6m), 모래·자갈·테트라포트, 예방·방제실습실, 분석실 등	770평
실내사격장 (지상1층)	25m(12사로), 강의실, 시뮬레이션사격장	403평
시설장비관리동 (지하1층, 지상2층)		320평

3.4 교육과정 현황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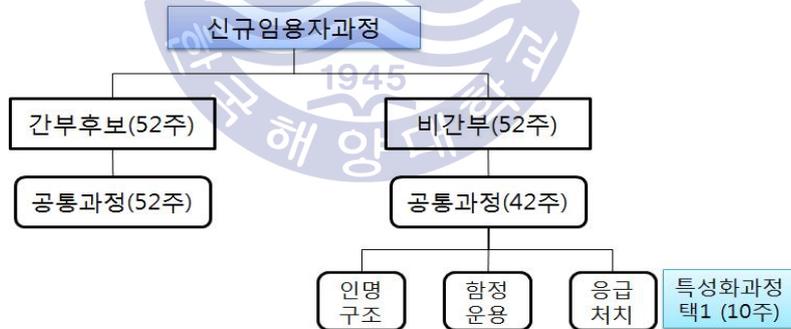
3.4.1 교육과정 현황

교육원의 교육과정은 크게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입과정, 기본과정, 전문과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밖에 공무원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과정이 있다.

신입과정은 간부후보, 신입경찰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과정으로는 치안정책과정, 경정, 경감, 경위, 경사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과정으로는 경비, 수사, 해양오염 관리 등 직무별로 나누어져 있다.

3.4.2 신입과정

신입과정은 새롭게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신입경찰과정(비간부)과 간부후보과정으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출처 : 국민안전처 정책보고서

Fig. 3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신규임용자 과정

비간부 신입과정은 52주(특채 36주) 과정으로, 4단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단계별 목표 설정 및 특성화 단계 도입으로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1단계로서 개인 맞춤형 체력단련을 통한 기초체력 강화를 목표로 약 10주간 편성되어

있으며, 2단계로는 함정 친숙화 및 전문훈련(훈련함),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각종 상황별 실전훈련을 목표로 약 20주 과정으로 되어 있다.

3단계로는 특성화(함정운용, 응급구조, 해상인명구조과정 중 택1) 및 자율학습으로 약 10주간 편성되어 있고 마지막 4단계로는 본부 주요정책과 연계된 핵심역량 강화 교육, 해양업무에 대한 사전적 업무숙지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감각 배양을 위해 12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구조 기본능력 배양현행 비간부 신입과정의 문제점은 채용 직렬별 구분 교육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공통과정 42주에 3개의 특성화과정 중 택일하여 10주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는 채용직렬별 채용자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커리큘럼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직렬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able 4 신입과정 단계별 주요내용

단계	단계목표
1단계(10주)	개인 맞춤형 체력단련을 통한 기초체력 강화 해양구조 기본능력 배양(보트조종술, 수상인명구조술, 응급조치)
2단계(20주)	함정친숙화 및 전문훈련(훈련함)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각종 상황별 실전훈련
3단계(10주)	특성화(함정운용, 응급구조, 해상인명구조과정 중 택1) 및 자율학습
4단계(12주)	본부 주요정책과 연계된 핵심역량 강화 교육 해양업무에 대한 사전적 업무숙지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감각 배양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임무를 크게 분류해보면, 해양경비, 해양안전, 해양환경, 법집행 및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임무 분류에 따라 신입과정의 커리큘럼의 공통과정을 다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양경비 과정 아래로 소분류하면 무도 및 기초체력, 호신체포술, 경비안전센터업무이해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경비작전, 실내 및 해상사격, 해양경비안전 핵심가치, 중국어 등 있다.

해양안전 과정 아래로는 선박재난대응, 소화방수, 해상 수색구조, 응급구조, 해상구난, 해양상식, 해양재난관리, 수상레저 및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장비인명구조, 인명구조 등 있다.

법집행 과정에서는 과학수사, 국제범죄수사, 수사실무, 해양정보, 경찰관직무집행법, 행정실무, 실무행정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외 동력수상레저 면허 취득, 공적가치, 외국해양경찰기관 소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역사, 의경관리, 언론 및 민원대응, 그리고 통신전산 및 장비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입과정 커리큘럼에서 해양경찰의 임무 분류에 따른 비중은 해양경비 부분이 29.9%, 해양안전 부분이 34.7%, 해양환경 부분이 6.2%, 법집행 부분이 14.8%, 기타 부분이 14.4%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5 비간부 신입과정(공통) 커리큘럼 분류

No.	대분류	소분류	시수(h)	비율(%)
1	해양 경비	무도 및 기초체력	75	
		호신·체포술	32	
		경비안전센터업무이해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15	
		경비작전	25	
		실내 및 해상사격	50	
		해양경비안전 핵심가치	9	
		중국어	12	
		소계	218	29.9
2	해양 안전	선박재난대응	18	
		소화·방수	16	
		해상 수색구조	16	
		응급구조	36	
		해상구난	8	
		해양상식	8	
		해양재난관리	9	
		수상레저 및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15	
		장비인명구조	22	
		인명구조	105	
		소계	253	34.7
3	해양 환경	해양오염방제	45	
		소계	45	6.2
4	법집행	과학수사	13	
		국제범죄수사	10	
		수사실무	12	
		해양정보	10	
		경찰관직무집행법	8	
		행정실무(예산·회계·복무)	18	
		행정실무(공문서관리-업무포탈, 보안업무규정, 보고서작성)	28	
		실무행정법	9	
		소계	108	14.8
5	기타	동력수상레저 면허 취득	27	
		공적가치	5	
		외국해양경찰기관	3	
		해양경비안전본부 역사	8	
		의경관리	2	
		언론 및 민원대응	4	
		통신전산 및 장비관리	56	
		소계	105	14.4
총계(시수)			729	100.0

해양경찰 실무에의 적응을 위하여 교육내용은 해양경비와 해양안전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해양환경 부분은 해양경비안전본부 내에서 일반 직렬을 따로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신입과정의 커리큘럼에서는 교육비중이 적은 것으로 보여 향후 이러한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간부후보 신입과정은 5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경찰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정립 및 역할에 따른 현장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 주요내용으로는 1단계(10주) 기초체력 해상구조, 2단계(18주) 해양특성화, 3단계(3주) 관서실습, 4단계(6주) 타기관 위탁교육, 마지막 5단계(15주)는 학과수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신입과정 커리큘럼의 분류와 동일한 방식으로 간부후보과정의 커리큘럼을 크게 5가지 부문, 즉, 해양경비, 해양안전, 해양환경, 법집행 및 기타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6 신입(간부후보)과정 커리큘럼 분류

No.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수(h)	비율(%)
1	해양경비	기초체력	정신교육 및 제식교육	32	
			훈련함 적응교육	35	
			원양항해 실습	35	
			무도 및 호신체포술	60	
			생활체육	25	
		해양주권수호	해양경비	17	
			해양작전, 경호(대테러)	8	
			상황관리 및 초동대응	18	
			해상사격	40	
			외국어(해사영어, 영어회화, 중국어 등)	40	
		해상범죄단속	해양정보(보안)	11	
			수사실부(단속요령, 수사서류)	12	
			과학수사(현장학습 포함)	8	
			국제범죄수사(외국어선 단속, 밀입국)	9	
		소계			350
2	해양안전	해양재난대응	해상수색구조	13	

No.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수(h)	비율(%)
			해양구난	6	
			해양응급처치	25	
			해양상식	6	
			재난대응	18	
			합정보수(소화방수 포함)	15	
		해양안전	안전센터 업무(연안해역 안전관리)	15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5	
			수상레저관리	6	
			인명구조(바다수영 포함)	105	
			스쿠버	35	
			장비인명구조(연안구조정)	15	
			장비인명구조(로프, 구명벌)	15	
			해상교통관제(VTS 현장견학)	8	
		동력수상레저 면허 취득	24		
		소계			311
3	해양환경	해양환경보호	해양환경 제도 및 이론	8	
			방제작업자 안전관리	3	
			HNS 사고대응	6	
			해양오염 사고대응	6	
			해양오염방제 실습	5	
		소계			28
4	법집행	경무행정 & 장비	행정실무(경직법, 복무, 예정, 인사, 예산)	15	
			공문서관리(보안업무), 보고서 작성법	27	
			장비 물품관리	12	
			해상통신 및 보안	15	
			정보화 시스템 활용	6	
		소계			75
5	기타	소양	소양 관련 7과목	75	

No.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시수(h)	비율(%)
			국민안전처 업무이해	3	
			중앙공무원교육원 위탁	210	
			소방업무 이해	35	
		실습	안전센터	35	
			안전서	35	
			본부 관서실습	35	
		기타	기타(입학식, 체육대회, 평가 등)	178	
			소계	606	44.2
			총계(시수)	1,370	100.0

신입(간부후보)과정 커리큘럼 구성 비율은 해양경비 부분이 25.5%, 해양안전 부분이 22.7%, 해양환경 부분이 2.1%, 법집행 부분이 5.5%, 기타 44.2%로 구성되어 있다.

간부후보생의 경우 해양경찰 초급 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 교육과 함께 중앙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 훈련함·해양경비안전관서 실습 등에 교육시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해양환경 부분은 비간부 신입과정과 마찬가지로 해양경비안전본부 내에서 일반 직렬을 따로 채용하여 배치하기 때문에 간부후보생에 대한 해양환경 교육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임. 하지만 해양오염사고도 해양재난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추후 간부후보 채용자들은 해양오염사고시에도 특정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양환경 부분에 대한 교육 내용과 시간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간부후보 신입과정과 비간부 신입과정은 신규 채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으로 현장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교육과 해양경비안전의 실무 기초, 체력평가 등의 커리큘럼이 공통적인 교육과목으로 볼 수 있다.

간부후보 신입과정은 중앙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 본부 관서실습, 소방·경찰 간부후보생과의 교류교육, 토론식 심화교육, 외국어 교육 강화 등을 수행하며, 비간부 신입교육은 인명구조, 응급처치, 선박운용 중 택일하여 10주간의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Table 7 신입과정 교육과정 비교

구분	간부후보	신입순경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명구조자격증, 해기사면허, 동력수상레저 면허 취득 필수 - 응급처치, 해상사격 등 훈련·실습 중심 교육 ■ 해양경비안전 실무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 안전, 수색구조, 수사, 해양오염 ■ 교육단계별 평가 및 체력 평가 실시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교육) 훈련함 적용 포함 ■ 중공교 7급 신입과정 위탁 ■ 본부 관서실습 ■ 소방, 경찰 간부후보생과 교류교육 ■ 교육종료전 토론식 심화교육 및 반복 훈련 ■ 전화영어 등 외국어 수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교육) 제식 및 기초 체력 단련 ■ 인명구조, 응급처치, 선박 등 특성화 교육(10주)

3.4.3 기본과정

기본과정은 계급별로 요구되는 필수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상황처리능력과 범위에 따라 과정별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별 사례 공유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실제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본과정은 경사 이상의 직급(경사, 경위, 경감, 경정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데, 이는 현장 지휘관 역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경사·경위·경감급은 다시 직급별 4개 과정(합정장, 기관장, 정책기획, 안전센터) 등으로 세분화하여 교육하고 있다.



출처 : 국민안전처 정책보고서

Fig. 4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기본과정 구성

기본과정을 과정별 살펴보면 총경은 12주 교육으로 통솔력, 혁신전략 등 지휘관으로서 필요한 핵심역량 배양, 각종 상황별 훈련 및 톤급별 함정 출동 (실습)하며, 경정 이하는 각각 3주 교육으로 중견간부로서 지휘역량 및 정책기획능력 강화 및 각 현장 상황별 문제 해결능력 제고, 그리고 경감과 경위·경사는 각각 역시 3주·2주 기간으로 시뮬레이션 활용, 각종 상황대응훈련(함정장) 선박안전점검 요령 등 현장중심 실무능력 배양(센터장) 중간관리자로서 정책, 기획 및 행정능력(정책기획) 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8 기본과정 과정별 기간 및 목표

과정(기간)	단계목표
총경(12주)	통솔력, 혁신전략 등 지휘관으로서 필요한 핵심역량 배양 각종 상황별 훈련 및 톤급별 함정 출동(실습)
경정(3주)	중견간부로서 지휘역량 및 정책기획능력 강화 각 현장 상황별 문제해결능력 제고
경감(3주)	시뮬레이션 활용, 각종 상황대응훈련(함정장) 선박안전점검 요령 등 현장중심 실무능력 배양(센터장) 중간관리자로서 정책, 기획 및 행정능력(정책기획)
경위·경사(2주)	

경사, 경위, 경감, 경정 기본과정의 세부교육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9 경사 기본과정의 구성

구분	세부과정	시수	비율	구분	세부과정	시수	비율
소형 정장	입교	1	1.4	기관 장	입교	1	1.4
	현장대응능력 강화	24	34.3		현장대응능력 강화	24	34.3
	소양	10	14.3		소양	10	14.3
	리더십&팀웍	7	10.0		기관전문교육	34	48.6
	상황대응(이론)	6	8.6		설문조사	1	1.4
	상황대응(훈련)	13	18.6		계	70	100.0
	사례분석	4	5.7				
	평가	4	5.7				
	설문조사	1	1.4				
	계	70	100.0				
정책 기획	입교	1	1.4	안전 센터 전문	입교	1	1.4
	현장대응능력 강화	24	34.3		현장대응능력 강화	24	34.3
	소양	18	25.7		소양	10	14.3
	행정실무	15	21.5		법령이해	19	27.2
	외국해양경찰	6	8.6		현장실무	11	15.7
	강의기술	5	7.1		토의발표	4	5.7
	설문조사	1	1.4		설문조사	1	1.4
	계	70	100.0		계	70	100.0



Table 10 경위 기본과정의 구성

구분	세부과정	시수	비율	구분	세부과정	시수	비율
소형 정장	입교	1	1.4	기관 장	입교	1	1.4
	현장대응능력 강화	24	34.3		현장대응능력 강화	24	34.3
	소양	10	14.3			소양	10
	리더십&팀워크	7	10.0		기관전문교육		34
	상황대응(이론)	6	8.6			설문조사	1
	상황대응(훈련)	13	18.6		계		70
	사례분석	4	5.7			평가	4
	평가	4	5.7		설문조사		1
	설문조사	1	1.4			계	70
	계	70	100.0				
정책 기획	입교	1	1.4	안전 센터 전문	입교	1	1.4
	현장대응능력 강화	24	34.3		현장대응능력 강화	24	34.3
	소양	18	25.7		소양	10	14.3
	행정실무	15	21.5		법령이해	14	20.1
	외국해양경찰	6	8.6		구조장비	5	7.1
	강의기술	5	7.1		현장실무	11	15.7
	설문조사	1	1.4		토의발표	4	5.7
	설문조사	1	1.4		설문조사	1	1.4
	계	58	100.0		계	70	100.0

Table 11 경감 기본과정의 구성

구분	세부과정	시수	비율	구분	세부과정	시수	비율
합정장	입교	1	0.9	기관장	입교	1	0.9
	현장대응능력 강화	26	24.8		현장대응능력 강화	26	24.8
	직무능력	24	22.9		직무능력	24	22.9
	소양지식	19	18.1		소양지식	19	18.1
	리더십&팀웍	7	6.7		기관전문교육	34	32.4
	상황대응(이론)	6	5.7		설문조사	1	0.9
	상황대응(훈련)	13	12.4		계	105	100.0
	사례분석	4	3.8				
	평가	4	3.8				
	설문조사	1	0.9				
	계	100	100.0				
정책기획	입교	1	0.9	안전센터장	입교	1	0.9
	현장대응능력 강화	26	24.8		현장대응능력 강화	26	24.8
	직무능력	24	22.9		직무능력	58	55.3
	소양지식	27	25.7		소양지식	19	18.1
	행정(실무)	15	14.3		설문조사	1	0.9
	외국해양경찰	6	5.7		계	105	100.0
	강의기술	5	4.8				
	설문조사	1	0.9				
	계	93	100.0				

Table 12 경정 기본과정의 구성

구분	세부과정	시수	비율
경정(공통)	입교	1	0.9
	현장대응능력 강화	33	31.5
	직무역량 강화	42	40.0
	소양	28	26.7
	설문조사	1	0.9
	계	105	100.0

기본과정은 지휘관급 직원들에 대하여 각 직급별로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교과목 구성 비율을 보면, 직급별 기본과정 내 현장대응능력강화 분야의 비율은 시수 기준으로 전체의 25~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장(소형정장)의 경우에는 상황대응분야를 포함시키면 직급별로 전체 시수의 50~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과정은 육상 경찰의 직급별 교육과정과 유사하게 구성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직무능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지휘관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기본과정과 커리큘럼의 개편을 통해 육상과는 차별화된 지휘관 교육·훈련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3.4.4 전문과정

전문과정은 실전에 능숙하도록 현장 전문성 고도화를 목표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은 연중(2월~12월) 실시하며, Pass/Fail 제도를 시행하여 시험통과시 능력개발점수를 인정하고 있다.

전문과정으로는 소양과정, 외부과정, 직무과정, 그리고 현장역량, 그리고 직무과정(경비안전, 수사정보, 장비·지원, 해양오염방제)으로 구성한다.



출처 : 국민안전처 정책보고서

Fig. 5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전문과정 구성

전문과정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소양과정에는 해기사 자격증 취득, 컴퓨터 자격증 취득, 힐링을 통한 PTSD 관리, 현장실무중국어가 있으며 외부과정에는 해양사고발생시 대처요령, 해안오염평가, 해양재난안전체험, 해양종사자교육 등이 있다.

직무과정에는 레벨별 해상안전관리, 상황관리, 상황처리 능력향상, 관제사 자격인증, 해양범죄수사, 방제실무 등을 비롯하여 해양경비실무, 해안경계 전문, 정보역량향상, 보안실무, 수사전담요원, 해양과학수사, 국제성 범죄수사, 장비관리, 정보통신, 교수요원 양성, 사격교수 양성과정 등이 있다.

Table 13 전문과정의 커리큘럼

과정	세부과정	과정	세부과정	과정	세부과정
소양 과정	해기사(항해) 자격증 취득	직무 과정	해양경비실무	직무 과정	방제실무 Level 3
	해기사(기관) 자격증 취득		해안경계 임무수행 작전		유해액체물질 사고대응
	컴퓨터 자격증 취득		해안경계 전문		해양오염예방 실무
	힐링을 통한 PTSD 관리		정보역량향상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외부 과정	현장실무중국어		보안실무	해양인명구조사 양성	
	해양사고발생시 대처요령(교원연수)		수사전담요원	특수구조요원 양성	
	해안오염평가		해양범죄수사(레벨1)	연안구조정 운용	
	해양재난안전체험(학생)		해양범죄수사(레벨2)	항해역량강화(레벨1)	
직무 과정	해양종사자교육		해양범죄수사(레벨3)	항해역량강화(레벨2)	
	해상안전관리(레벨1)		해양과학수사	기관장비운용능력강화 (레벨1)	
	해상안전관리(레벨2)	국제성 범죄수사	기관장비운용능력강화 (레벨2)		
	재난대응(레벨1)	장비관리	기관제어시스템 전문화		
	재난대응(레벨2)	정보통신	합정 구급요원 양성		
	상황관리(레벨1)	교수요원 양성	합정무장자동화		
	상황관리(레벨2)	사격교수 양성	항공정비 과정		
	상황처리 능력향상 (VTS레벨1)	훈련교관요원 양성	비행안전 과정		
	관제사 자격인증 (VTS레벨2)	방제실무 Level 1	해상특수기동대 양성		
	센터장 지휘역량 (VTS레벨3)	방제실무 Level 2	2급응급구조사 양성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교육과정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지향하는 인재의 양성에

적합하게 전체적으로 잘 편성되어 있으나 장기적인 교육계획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장기적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르는 세부적 교육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장기적인 교육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이행되지 못하고 조직의 개편에 따라 교육과정의 편성과 내용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에 해가 바뀔 때마다 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수정되고 있어 정형화된 장기적 계획의 마련이 요구된다.

우수한 인재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런 기본적인 철학적 바탕 위에서 채용과 교육의 진행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각종 재난사고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났듯이 현장의 지휘관이 현장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지휘역량 강화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가장 먼저 현재 해양경찰 조직의 지휘관 급 계급인 총경급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임무 수행의 특성상, 각종 해양재난에 단계별 대비·대응 및 이에 적합한 지휘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현장 지휘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교육이 단순히 총경급의 고위 지휘자 과정에 개설된다고 하여 단 한 번의 강화교육으로 그 역량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초기 단계의 현장 지휘관을 맡을 수 있는 계급인 경사 및 경위 계급에 대한 기본교육에서부터 이러한 기초적인 현장대비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이 기본교육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경사, 경위, 경감, 경정급에 실시되는 기본과정은 2주라는 짧은 기간과 교육 내용의 형식성으로 볼 때 ‘기본’이라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들고, 차상위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절차적인 교육이라는 틀을 뛰어넘기 어려우며, 현재 해양경찰의 계급구조를 볼 때 자동승진제도의 영향으로 경사와 경위 계급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그 담당하는 직무가 겹치는 현상을 검토한다면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의 구분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4개의 계급에 대한 기본교육 과정을 지휘관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에 맞춘 수준 단위의 3단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형식적인 기본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지휘관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는 것이 요구된다.

3.4.5 교육 만족도(교육평가) 조사 결과 및 분석

신입경찰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교육효과 조사를 통해 교육운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로 신입과정 교육의 효율성 향상시키고자 15년 9월 1일부터 10일간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교육받은 신입경찰관 2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근무 중에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졸업생이 54%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에 따라 문서작성 및 처리, 시스템 관리 능력이 가장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시 실습수업 비율이 70% 이상되어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평가의 경우에도 실습위주의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단계별 교육운영 체계 및 특성화 과정운영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으며 현장감 있는 교육실시(시각적 자료, 실습, 시나리오에 의한 집행 등)와 평가항목 축소 및 입교시 정신교육 등 해양경찰 업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개선의견도 있었다.

문서작성, 업무포탈 등 시스템 활용 능력과 인명·응급구조 등 실습위주의 교육은 필요성이 높은 반면 ‘법령교육’, ‘핵심가치’ 등 현장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교육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다. 이는 실습위주의 수업은 늘리고 실무에서 크게 필요성을 갖지 못하는 과목 등은 줄일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 현장근무시 도움되는 20과목의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4 현장근무시 도움 되는 20과목 순위

순위	과목	점수	순위	과목	점수
1	응급구조	149	11	컴퓨터활용	83
2	수상인명구조	140	12	정보통신	82
3	보고서 및 업무포탈	137	13	훈련센터(오염방제)	79
4	센터(항해/기관)	124	14	훈련센터(함포, 사격)	75
5	수상레저(면허취득)	122	15	무도 및 호신체포	63
6	관서실습	118	16	해양환경	51
7	훈련합실습	103	17	정보, 외사	40
8	훈련센터(소화방수)	94	18	수사실무	38
9	훈련센터(레이더 및 vts)	92	19	수색구조	37
10	훈련센터(재난대응)	84	20	합정운용	33

3.5 함정 및 안전센터 교육훈련

실무 현장에서의 훈련 분야로는 크게 함정 훈련과 안전센터 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함정에서 실시하는 훈련은 함정 자체훈련, 해경서 주관의 서 훈련, 지방본부 주관의 해상종합훈련, 정기수리 후 실시하는 직무훈련, 신조 또는 대체함정 취역 후 실시하는 취역훈련 등으로 구분된다.

함정 자체훈련은 전 함정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 서 주관 훈련은 해경서장 주관으로 6가지 정박훈련(1.응급처치, 2.투양묘, 3.비상조타, 4.상황배치·포사고처치, 5.기관종합문제해결(훈련평가), 6.소화 또는 방수)과 9가지 해상훈련(1.해상수색, 2.인명구조, 3.선내진입·퇴선유도, 4.해상 집단행동 대응, 5.검문검색(일반, 불법외국선박), 6.예선·피 예선, 7.해상사격, 8.타선소화, 9.해양오염방제)으로 구분된다.

함정을 운용하며 경비와 구조업무를 하는 데에 맞춰 해상사격 등을 비롯하여 해상수색,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로 훈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상종합훈련은 지방본부장 주관으로 훈련종목은 서 주관 훈련과 동일한 훈련을 말하며, 직무훈련은 정기수리 함정이 수리 종료 후 실시, 취역훈련은 신조 및 대체 함정 건조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안전센터 훈련으로는 크게 매일 안전센터 주관으로 하는 자체 교육훈련과 매일 교육훈련지원반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 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교육과목으로는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안전센터 시스템 운용 관련 작동법 등이 있으며, 훈련은 안전센터의 구조능력 향상을 위해 연안구조정 운용술, 익수사고 구조훈련, 고립사고 구조훈련, 지역 특성화 훈련(침수, 화재, 해양오염 등), 인명구조장비 사용법(레스큐 링·캔·백·튜브, 구명줄, 로프매듭, 아스텍, 들것 등), 응급처치술(심폐소생술, 자동심장 충격기 등), 상황처리 요령, 추락사고 구조훈련 등이 있다.

연안구조정 운용을 비롯한 응급처치 등 항포구 등에 위치한 안전센터 업무에 맞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함정훈련 종류			
분 야	주 관	훈련기간	대 상
함정 자체훈련	함·정장	연 130 시간	전 함정
서주관 훈련	해경서장	필요시(1~2일)	대상 함정
해상종합훈련	지방본부장	상반기 4일 하반기 3일	전 함정
직무훈련	지방본부(1000톤 이상) 안전서(1000톤 미만)	1000톤 이상 : 3일 1000톤 미만 : 2일	정기수리 함정
취역훈련	지방본부장	1000톤 이상 : 5일 300톤 이상 : 4일 300톤 미만 : 2일	신조 및 대체 함정

2. 함정 해상종합훈련 종목	
훈련	종 목
해상 (9)	1.해상수색, 2.인명구조, 3.선내진입·퇴선유도, 4.해상 집단행동 대응, 5.검문검색(일반, 불법외국선박), 6.예선·피 예선 7.해상사격, 8.타선소화, 9.해양오염방제
정박 (6)	1.응급처치, 2.투·양묘, 3.비상조타, 4.상황배치·포사고처치, 5.기관종합문제 해결(훈련평가), 6.소화 또는 방수

3. 해경안전센터 교육훈련 종목	
구 분	종 목
훈련	연안구조정 운용술, 익수사고 구조훈련, 고립사고 구조훈련, 지역 특성화 훈련(침수, 화재, 해양오염 등), 인명구조장비 사용법(레스큐 링·캔·튜브, 구명줄, 로프매듭, 아즈텍, 들것 등), 응급처치술(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등), 상황처리 요령, 추락사고 구조훈련
교육	안전센터 시스템 운용 관련 작동법 등

Fig. 6 함정 및 해경안전센터 훈련

제 4 장 외국 해양경찰 교육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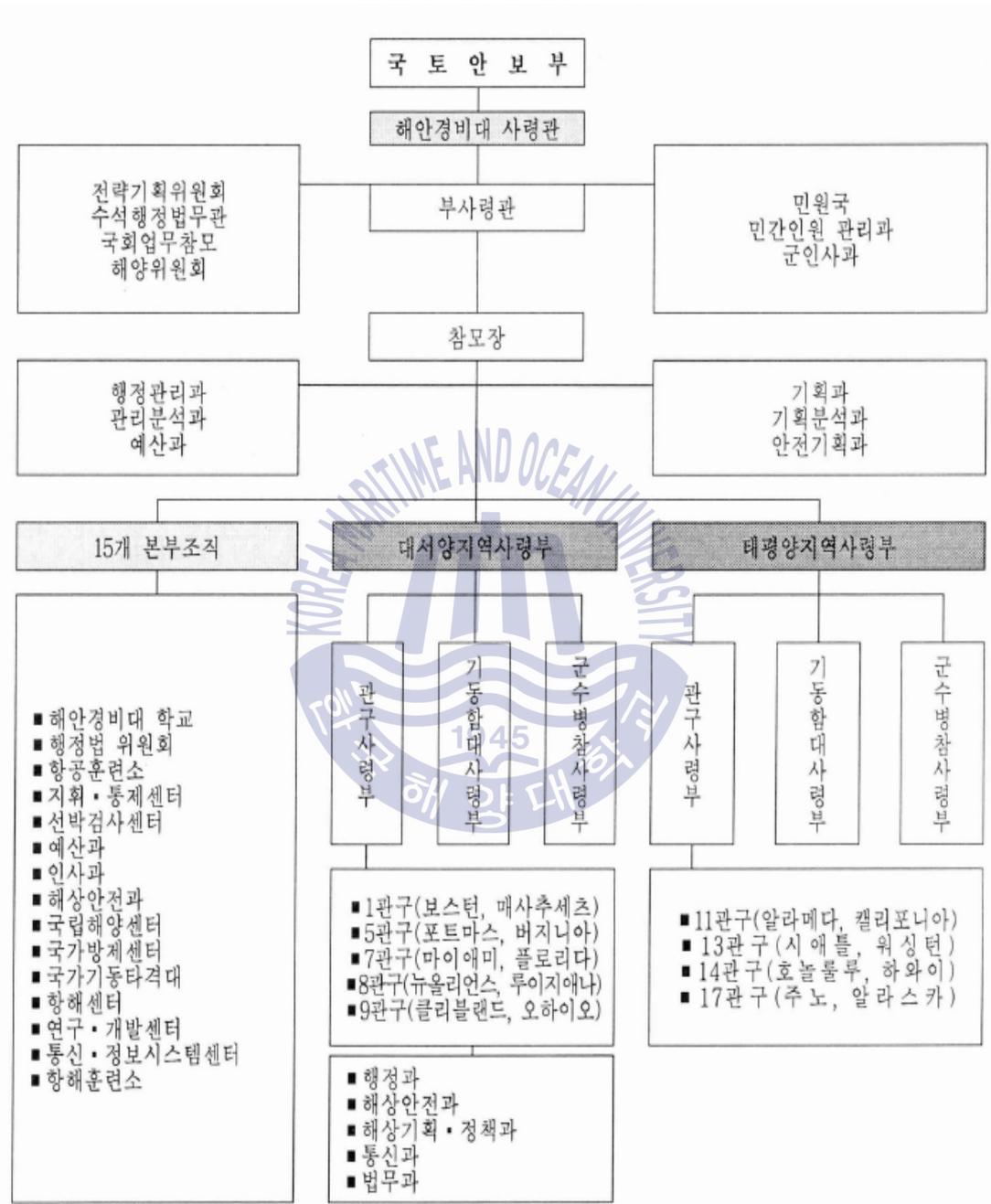
4.1 미국 해양경비대(USCG) 11)

4.1.1 해양경비대(USCG)의 조직

해양경비대(US Coast Guard)는 군인으로 다중임무를 띤 해상경비요원으로 국토안보부(Depar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이며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 이어 제 5군으로 편성되어 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해안경비대사령관을 기준으로 전략기획위원회, 수석행정법무관, 국회업무참모, 해양위원회, 민원국, 민간인권관리과 등이 있고 직속 참모장이 있으며, 예하 직할 부대로 태평양지역사령부와 대서양지역사령부 및 기타 15개의 별도 본부 직속 조직이 있다. 구성원으로는 현역, 민간인, 직원, 자원봉사자인 보조대 및 예비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말 기준으로 현역 38,000명, 민간인 6,000명, 보조대 35,000명 등 약 79,000 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상시 동원을 위하여 예비역 8,000명이 확보되어 있다.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성장 동력의 핵심은 해양경비대(USCG)의 끊임없는 현대화와 재정비 노력의 결과물이다. 특히 매년 16억 달러 이상 예산을 증가시켜 해안경비대의 역량을 강화해 왔다. 해양경비대(USCG)는 현재 약 250여대의 경비함과 1400여대의 고속단정, 총 180대의 헬기, 204대의 고정익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해양 안전과 보안 팀, 추가적 장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들은 중요한 기반시설, 해안과 항만 보안, 그리고 방어 준비를 하도록 하는 능력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다.

11) 임형록, 정석균(2014), 「해양경찰 인력양성 체계 발전 방안」 pp.29~41



출처: uscg.mil 재구성

Fig. 7 미국 해양경비대 조직도

4.1.2 해양경비대(USCG)의 임무

해양경비대(USCG)의 임무는 각 주마다 대동소이하다. 주 임무로는 미국 상업 및 휴양 어업법을 적용하여 불법 어업활동을 감시 및 통제 그리고 해상 교통법을 적용하여 해상 교통 안전의 확보, 해상 사고 및 범죄 활동 조사 및 예방활동, 해양 환경 보존 활동, 해양 순찰 활동, 수색 및 구조, 응급 상황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대테러 순찰활동 등의 대테러 임무 수행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비중은 높지 않다. 오히려 대테러 활동은 연방(Federal)정부 급의 기관인 미 이민국, 미 내무부 및 국립공원 관리청 소속의 공원 경찰, 그리고 해안경비대 산하의 해양경찰부가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지상경찰과 해양경찰의 지휘부를 이원화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지상과 해상의 경계를 두지 않아 지상 경찰과 해상경찰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할구역의 모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고,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통해 정보공유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목적을 갖는다. 그 대신 USCG와 같은 연방 정부 및 주 정부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광활한 해안에 관련된 임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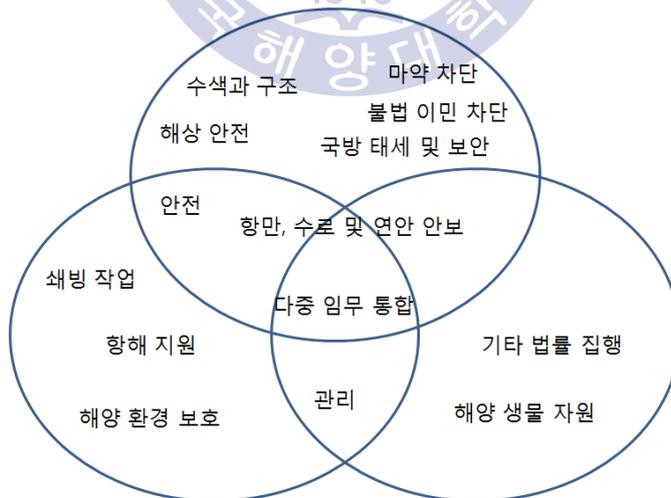


Fig. 8 해양경비대(USCG)의 다중 임무

4.1.3 미 해양경비대(USCG)의 교육 및 훈련제도

해양경비대(USCG)의 교육기관은 크게 훈련센터(Training Center)와 간부양성 주 교육기관으로 사관학교(USCG Academy)가 있다. 해양경비대(USCG)의 교육 목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교육의 종류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신규임용자에 대한 교육, 현역자에 대한 교육 및 함정교육 등이 있다.

훈련센터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장소 개념으로 구분할 경우 첫째, 신입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Cape May 신병훈련센터(Recruit Training Center) 둘째, 항공훈련을 담당하는 Mobile 항공훈련센터(Aviation Training Center: ATC) 셋째, 항공기술교육을 담당하는 Elizabeth City 항공기술훈련센터(Aviation Technical Center: ATTC) 넷째, 다양한 기술실무교육을 담당하는 Petaluma 훈련센터 다섯째, 직원 직무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York 훈련센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임무에 대한 훈련을 담당하는 Camp Lejeune 특수훈련센터(Special Missions Training Center)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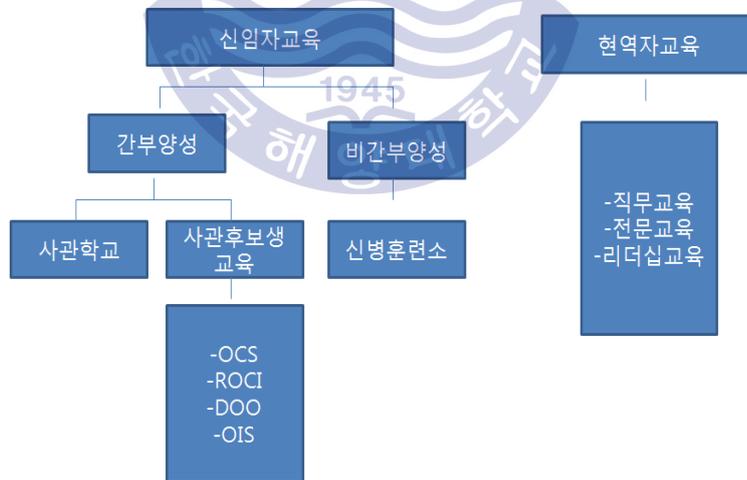


Fig. 9 해양경비대(USCG) 교육 제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볼 때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Leadership Development Center,

Officer Candidate School, Chief Petty Officers Academy, Chief Warrant Officer Indov School 등이 있으며, 또한 국제교류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세계 각국의 공무원 초청 프로그램이나 교환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1) 신병훈련센터(Recruit Training Center)

뉴저지 주 Cape May에 위치해 있는 연안경비대 신병훈련소(Boot Camp)는 연안 경비대에 지원하는 사병을 교육시키는 신병훈련센터이다. 훈련기간은 8주이나, 체력검사, 수영시험 또는 학술시험에 불합격되는 자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이 연장된다. 신병훈련소의 훈련은 매우 엄격하며, 훈련의 목적은 해양경비대(USCG)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법개요, 군시민권, 스트레스 관리, 코스트가드 명령계통, 해상생존법, USCG 직책 및 보직, 군인사관리법, 갑판원 보호장구 취급법, 코스트가드 사명 및 전통, 선박운용술, 함정 및 항공기의 업무수행, 갑판정비 및 페인팅, 구명장비, 단정 선원 및 부력, 윤리론, 개인부상장비, 비상훈련 및 비상장치, 화재예방 및 소화법, 소화장비, 당직근무, 호스 취급법, 히빙라인 및 로프 취급법, 응급처치법 등이다.

(2) 항공훈련센터(Aviation Training Center: ATC)

알라바마주 모바일에 위치한 항공훈련센터는 해양경비대(USCG)의 비행학교인 동시에 항공기지를 겸하고 있다. 항공기지로써 모바일 기지는 미국 남부 텍사스와 루지애나 등 멕시코만 연안을 관할 구역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극지방의 함정물류지원, 극지방 연구지원, 쇄빙선 지원의 임무를 띠고 남극 등 극지방에 항공기를 파견한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Elizabeth City에 위치한 항공기술센터는 능력 있는 항공정비사를 양성하여 미국 연안경비대 항공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비와 보수유지에 힘쓰고 있다. 교육과정으로는 항공전자기술자, 항공정비기술자, 항공생존기술자 양성과정으로 나누어진다.

(3) Petaluma 훈련센터(Training Center Petaluma)

캘리포니아주 Petaluma에 위치한 훈련센터는 주로 하사관(Petty Officer)을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IT과정, 보건 및 통신 등 운영지원과정, 리더십 훈련과정 등 다양한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4) York Town 훈련센터(Training Center York Town)

버지니아주 요크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주로 하는 훈련센터로써 외국인 직무교육프로그램도 담당하고 있다. 직무교육과정에 따라 크게 3개 분야의 school로 구분되며, 각 school에서 개별 프로그램을 교육한다. 한편 3개 분야의 school은 운용과정(Operation Branch: SAR(Search & Rescue)과정, 항로표지과정, 갑판업무과정, 소형보트 운행과정, 해상범집행과정)과 해상안전과정(Marine Safety Branch: 항만보안 전문가과정, 항만운영과정, 해상검색 및 조사과정, 해상과학기술과정, 응급상황대처과정 등)과 엔지니어링 및 무기취급과정(Engineering & Weapons Branch)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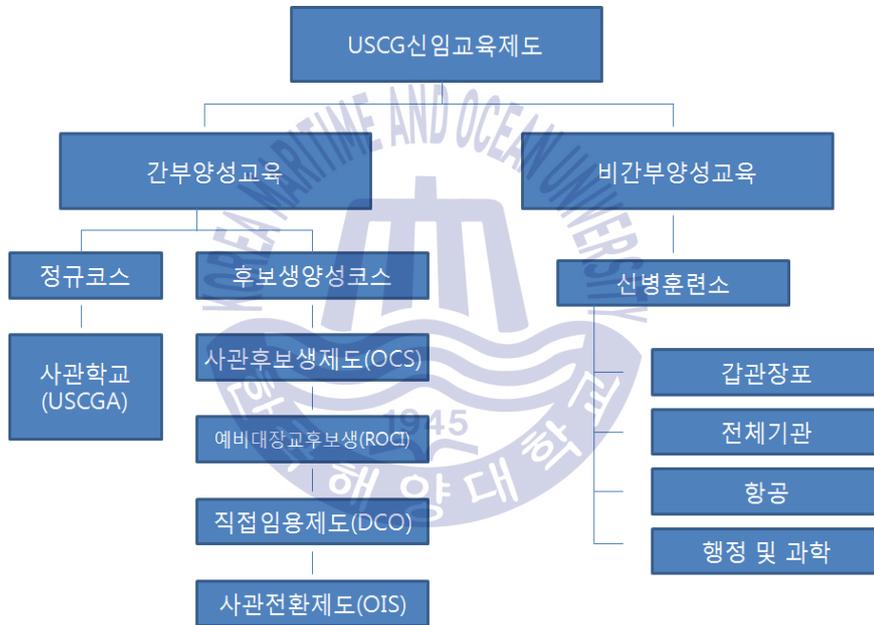


Fig. 10 해양경비대(USCG) 신입교육제도

(4) 사관학교(Coast Guard Academy)

이 학교는 1876년 Dobbin호에서 9명의 사관 훈련프로그램으로 시작한 교육제도가 발전, 변경된 것으로 현재 입학정원은 200명이다. 이곳에는 토목공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조선·해양과학, OR, 정부학 및 경영학으로 총 8개의 전공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과정에는

전공별 심화과정과 함께 공통과목인 물리, 화학 및 수학 등의 순수 기초과학과 항해학 및 해양학 등의 해양기초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경비대(USCG)에 사관학교 이외에 간부양성 기관으로 사관양성학교(Officer Candidate School) 그리고 소수민족 사관양성제도(Minority Officer Recruitment Effort)가 있다.

그 목적으로는 첫째, 특수한 인재를 선발하고 교육을 통하여 업무에 종사한다는 목적 둘째, 모든 생도가 선박(함정)운항 능력을 갖추는 목적 셋째, 리더십 교육 강화목적 넷째, 생도와 교관의 비율을 3:1로 현장 Man to Man으로 집중교육을 진행한다.

매년 200명 정도의 정원을 갖추고 있으며, 입학생 가운데는 해양경비대(USCG)의 현역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총원의 18%가 여성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학년 학비 및 기숙사 생활비 등은 무료이고, 월 560달러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개 반의 평균 학생 수는 20~25명이며, 상위 반에서 12명까지 탈락시키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은 실습강좌를 위주로 하고 있다. 해양경비대(USCG)사관으로 임용 후에는 인명구조, 해양오염 대응, 마약밀수범의 체포, 해양 법률의 집행, 불법이민의 차단, 자국 어업보호, 해상안전 확보, 해난구조 등으로 해양경비대(USCG)의 전반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졸업 후에는 학사 학위를 인정해주며 5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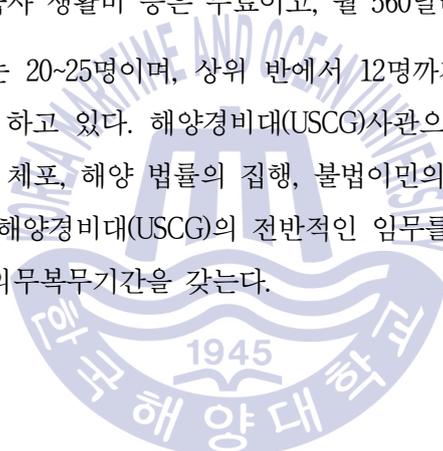




Fig. 11 미국 사관학교(Coast Guard Academy)의 학부 및 전공

4.2 일본 해상보안청(日本海上保安庁, Japan Coast Guard)¹²⁾

4.2.1 일본 해상보안청(日本海上保安庁, Japan Coast Guard) 조직

21세기의 사회, 경제상황을 전망할 때, 해상보안청의 사명은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다. 근래의 글로벌화, 행정개혁, IT혁명, 고령화 현상의 심화, 환경문제 등에 의해 경제사회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이들은 해상보안업무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지구 규모의 환경 악화, 폐기물 불법투기 및 표류 쓰레기에 의한 해양오염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해상보안청에서는 각종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연대해 해양환경의 오염상황을 조사 및 분석하고 오염정도를 파악하여, 오염 방지 및 해양환경의 회복 등의 시책에 반영하고 있다. 표류 쓰레기 등에 관해서는 항만관리자, 해안관리자, 환경NGO 등과의 적극적인 연대에 의한 조사 실시, 공표 및 지자체의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구 규모의 환경보전문제에 관한 구체적 공헌, 방지 외국인선 문제에 관한 대책 추진 및 국내외 관계 기관이 조사한 해양환경에 관한 각종 데이터 등을 수집 및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사명은 치안유지, 해상 교통안전 확보, 해난구조, 해상방재 및 해양

12) 임형록, 정석균(2014), 「해양경찰 인력양성 체계 발전 방안」 pp.42~47

환경보전에 관한 임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내의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본토 육지 면적의 86.9%에 달하는 일본의 해안 곳곳에 불법 출입국, 밀입국, 해적 행위, 불법 어로 등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으로 1948년 창설되었다. 그러다가 2001년 운수성에서 국토교통성의 4개 외국 중 하나로 이관 되었는데, 이러한 해상보안청은 바다의 경찰, 소방에 대한 업무에서부터 수로 측량, 해도 작성, 등대 등의 항로 표식 건설, 운용 등 바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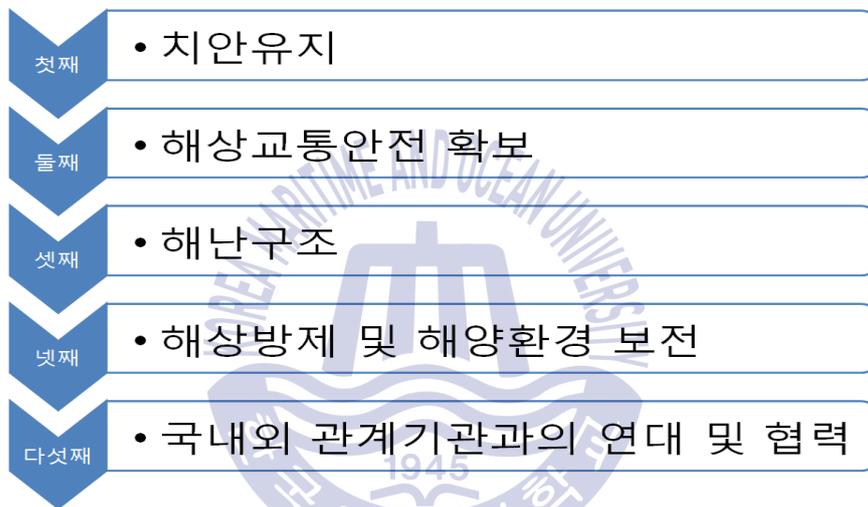


Fig. 12 일본 해상보안청(日本海上保安庁)의 주요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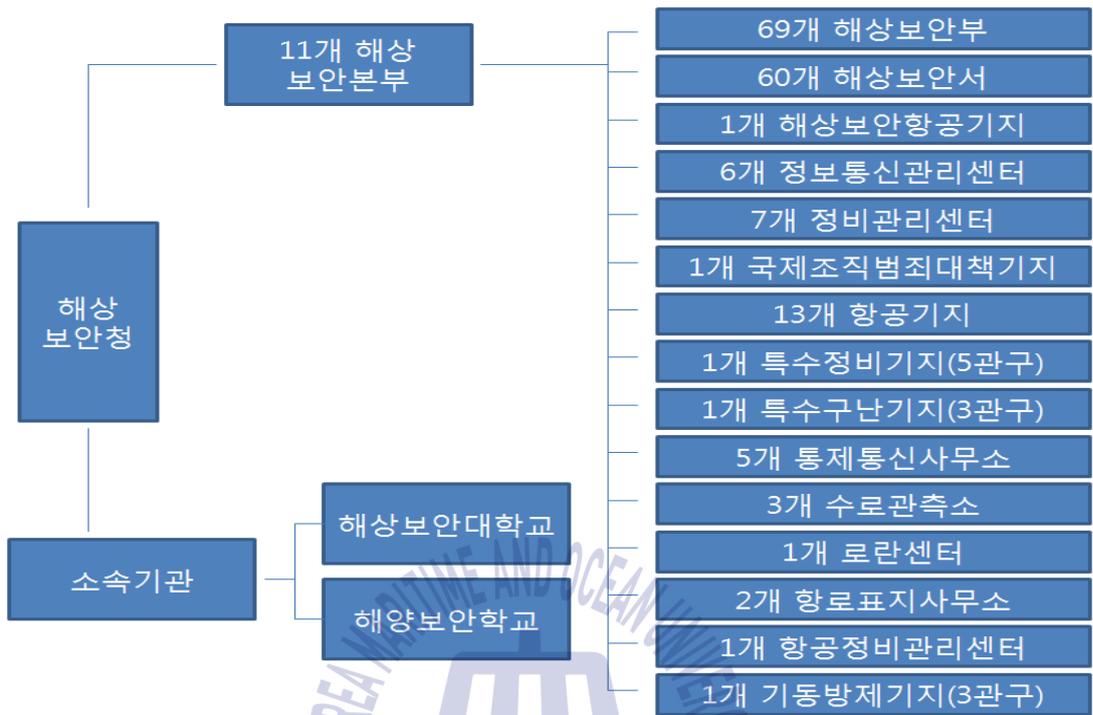


Fig. 13 일본 해상보안청(日本海上保安庁) 조직도

해상보안청은 본청을 중심으로 전국에 관구해상본부 11개, 해상보안부 69개, 해상보안서 60개 등을 배치해 일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청에는 장관아래 총무부, 장비기술부, 경비구난부, 해양정보부, 교통부의 5개의 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청은 기본적인 정책 법령과 개정, 다른 청과의 업무조정과 같이 해상보안행정 전체를 지휘 및 통솔 한다.

11개의 해상보안본부는 우리나라의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상보안부, 해상보안서, 항공기지에 사무소를 배치해 순시선과 항공기 등을 배치하고 있고, 각각의 사무소에는 해상치안유지와 해난구조, 선박교통의 안전확보 등 현장 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2.2 일본 해상보안청의 교육제도

(1) 해상보안대학교(Japan Coast Guard Academy)

해상보안대학교는 1948년 해상보안청 개청 이후 해상보안청의 간부직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1951년에 개교하였다. 설립 목적은 해상보안청의 직원에 대하여 간부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및 해상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수기능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행한다.

해상보안대학교는 일본의 일반 대학교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완전 기숙사 체제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교육환경에서 광범위한 해상보안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본과 4년 및 전공과 6개월 등 모두 4년6개월로서 졸업 시 학사학위(해상보안)졸업자격과 함께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또한 본과 및 전공과 이외에 일반직원 중에서 선발한 자에 대한 초급간부로서 필요한 학술 및 기술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특수과도 설치되어 있다. 특수과는 해상보안관 간부를 단기에 양성하는 제도로서 해상보안대학의 주요 교육프로그램중 하나이다. 지원자는 4년제 대학졸업자 및 해상보안학교 졸업자로서 소정의 기간 동안 해상보안청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며, 교육기간은 해기면허소지자의 경우 6개월, 미소지자의 경우 12개월이다. 특수과에서는 항해전공, 기관전공 및 통신공학전공으로 나누어 이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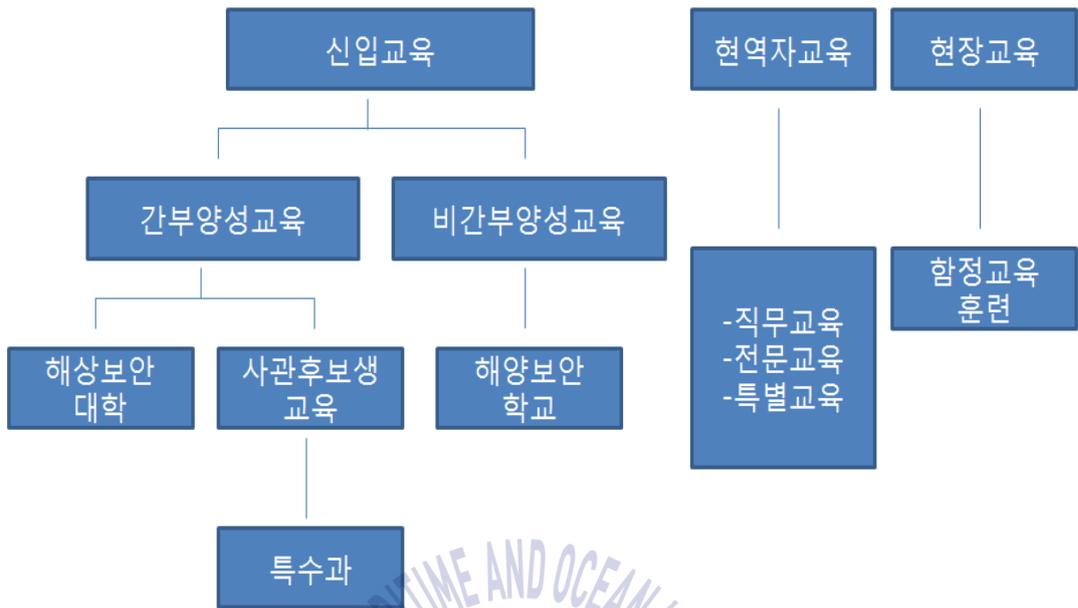


Fig. 14 해상보안청의 교육제도

정규코스인 본과의 입학정원은 약 50명이고, 여기에는 항해전공, 기관전공 및 통신공학이 있다.



Fig. 15 해상보안대학 전공구분

(2) 해상보안학교(Japan Coast Guard School)

해상보안학교는 해상보안청의 일반 직원 양성교육기관으로 해상보안청의 직원에 대하여 해상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취득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 및 해상보안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특수기능을 취득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행하는 학교이다.

만 24세 미만의 고졸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입학과 동시에 학생은 해상보안청 직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되며,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원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 등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교육과정은 선박운항시스템과정(1년), 정보시스템 과정(2년), 해양과학과정(1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졸업 시 업무와 관련된 각종 국가자격을 취득하며, 해상보안대학교 특수과에 진학할 수 있다.

교육과목은 전 과정에 적용되는 공통과목과 각 과정별 고유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공통과목은 법학개론, 해상보안업무개요, 초임공무원소양, 국제법, 영어, 정보처리, 통신운용, 업무실습, 소형선조종, 체육 및 훈련, 승선실습과 각 과정별 고유과목 및 전공과목 등이다.



Fig. 16 비간부(해상보안직원) 교육과정

Table 15 비간부(해상보안직원) 교육과정

교육과정	기간	교육 내용
선박운항시스템	1년	합정운항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해상범죄 취체 등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항공	1년	항공기 조종사가 되기 위한 기초교양과 해상범죄 취체 등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정보시스템	2년	통신기기의 운용관리와 항해안전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해상범죄 취체 등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해양과학	1년	항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데이터 수집·해석·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을 학습하는 과정

(3) 해상보안학교 모지분교

40세 미만의 고졸이상의 학력자 중 해기사 자격증, 무선조종사 자격증, 항공조종사 자격증,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시험을 실시하고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해상보안관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연수시키는 훈련기관이다. 연수기간은 6개월이며 입교 동시에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해상보안청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고, 동시에 국가공무원 공제조합원으로서의 각종 사회보장을 받는다. 교과과정은 교양 및 훈련, 법학과 해상보안학 등의 교육과 함께 6일의 승선실습으로 구성된다.

Table 16 해상보안관 및 일반직원 재연수과정

구분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일반연수	해상보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연수 • 신규채용직원(일반직) 연수등
	인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임행정연수 • 각급 행정연수 • JST 지도자 양성연수 • 연수교관연수 등
	국토교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직원(종합직) 연수 • 초급매니지먼트 • 상급매니지먼트 • 위기관리(국토교통성 관리직) 등
	대학 등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보안정책과정 • 대학원 파견연수(교관양성) • 방위연구소 일반·특별과정 • 방위대학교 파견연수 • 인사원 행정관연구원(장기·단기·국내) • 세계해사대학 등
계층별 연수	해상보안청(조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계원과정 • 순시정 초임감독자 연수 • 중견간부과정 • 상급간부연수
	해상보안청(자격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수기술과정 • 항공요원양성(헬기기초, 헬기상급, 정비상급)
	방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조종사 • 항공학생
	민간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요원양성(조종 및 정비) • 구급구명사양성
전문업무 연수	해상보안청(요원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어학과정 • 위험·유해물질사고대응과정 • 감식상급과정 • 운용관제관과정 • 총괄운용관제관과정 • 항공요원양성(정비기초, 항공통신 등) 등
	해상보안청(안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M 연수 • 함정안전운항과정 등
	해상보안청(지도자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압지도자양성연수 • 정보 Security 지도자양성연수 등
	민간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말리아어 연수 • 정보기술해석연수 • 해상원자력방재연수 등

4.3. 중국 해경국¹³⁾

4.3.1 중국 해경국(中國海警局)의 조직도 및 업무

중국은 치안 관련 업무를公安부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해양에서 항행 안전에 관한 업무는 교통부내의 몇 개의 국이 분담하고 그 중심부서는 해경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公安부 변방관리국 소속 군인들이 해상, 경비, 해상 범죄를 담당하고, 해상 안전관련 서비스는 교통부 해경국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담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국가주권 보호, 출입국 질서유지, 변경 및 연해지구의 사회치안 유지 및 법률에 따른 행정관리, 정상적 국경 왕래 확보, 범죄단속과 차량·선박·항공기·기차 등의 출입국 검사, 해경국에 대한 관리업무이다. 특히, 북한·미얀마를 비롯한 중국 경계지역 및 홍콩·마카오지역에 대한 순찰 등을 통해 국경지역 범죄예방 및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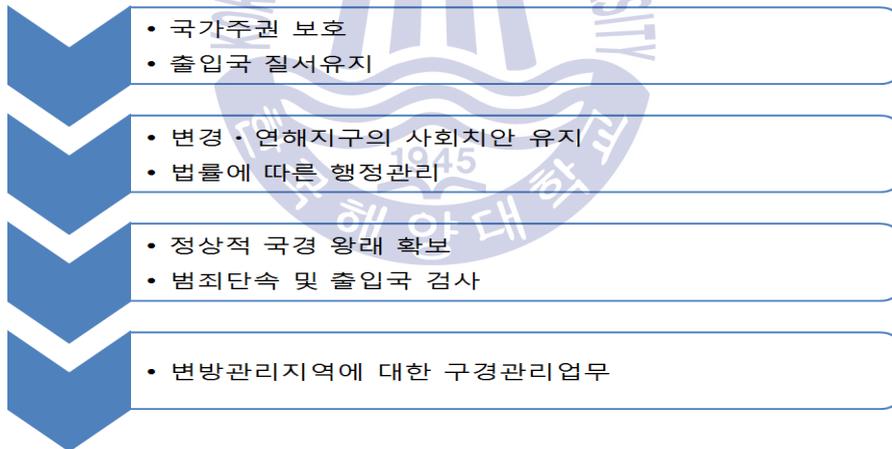


Fig. 17 중국 해경국의 주요 업무

중국해경국은 7개 과와 15개 지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개의 지방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5개의 지방 조직 중에서 4개의 큰 매우 조직을 갖는 대관구 조직으로 해상안

13) 임형록, 정석균(2014), 「해양경찰 인력양성 체계 발전 방안」 pp.48~50

전국 본부 조직과 유사한 하부 조직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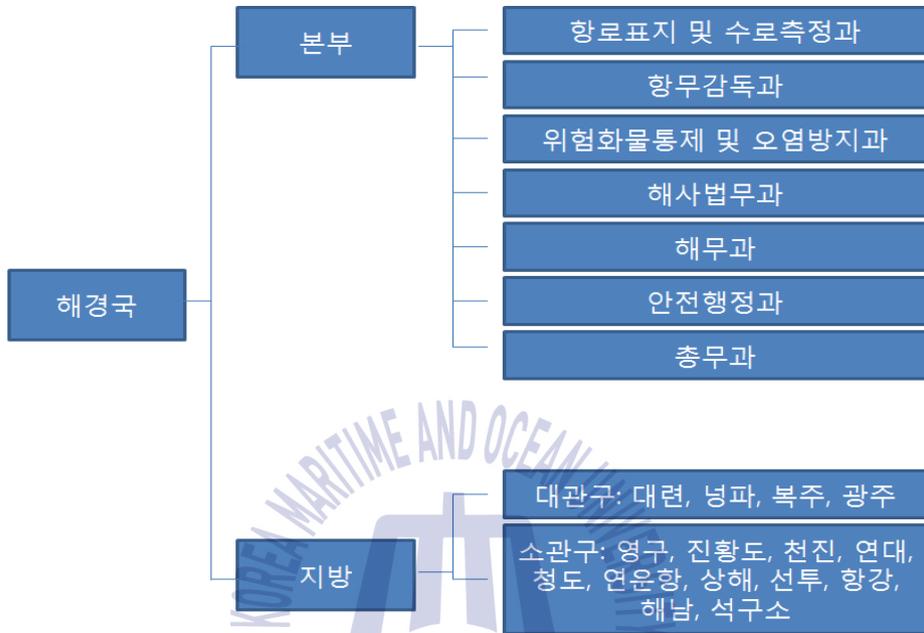


Fig. 18 중국 해양국 조직도

4.3.2 중국 해경국의 교육제도

(1) 공안해경학교

공안해경학교는 공안부 직속의 현역제 학교이며, 공안부 해상국 부대의 유일한 교육부의 비분을 통과해 설립해 자체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이다. 교육과정은 본과 4년제, 전공 3년제, 특수목적위탁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박지휘학과(해경합정지휘), 전기기계학과(기술지휘), 정보기술학과(해경정보지휘), 보급관리학과, 연수학과 등 5개의 학과로 이루어져 있다.

(가) 입학자격

만 20세 이하의 보통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공산당원 또는 공산주의 청년단 단원이어야 한다. 남자는 키 168cm, 여자는 158cm, 시력 0.4이상 이어야 한다. 한편 특수목적위탁 전공(항해기술, 기관공학기술) 응시자 외의 응시자들은 학교회(學院會)와 성급(省級) 공안기관에서 주관하는 군인신체검사(軍檢), 면접과 정치신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수목적 전공응시자는 해당 전공과목 시험에서 커트라인을 넘기면 합격하며, 신체검사는 「보통 고등전공학교 학생모집 신체검사 업무 지도의견」에 근거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본과 응시자의 수능점수가 현지 보통대학교(2本)¹⁴⁾의 커트라인 이상이다.

(나) 합격자 대우

합격자(특수목적위탁 전공자 외)는 정치신분과 신체검사를 재차 실시하여 합격할 경우 학적·군적을 얻고 합격자 가족은 군인가족 대우를 받는다. 재학기간 동안 학비와 기숙사비 면제, 경찰복장과 침구류 등을 보급받고, 1인당 매월 360여 위안(한화 약 6만원)의 군인수당과 500여 위안(한화 약 8만5천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항해기술, 기관공학기술과 같은 특수위탁 전공과목 수료자는 입학후 신체검사 및 재심사를 합격하면, 학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군적은 없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학비와 숙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다) 실무배치 및 직책

모든 학과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한 후 졸업을 허가하며, 교육부에서 보통대학졸업증을 발급하고, 졸업생은 모든 중국 전역의 성(省), 자치구, 직할시에 위치한 공안변방부대에 배치된다. 졸업생은 변방부대에서 1년의 인턴과정을 거쳐 합격된 후, 본과 졸업생에게 무장경찰(武警) 중위 경찰계급을 수여하고, 전문과목 졸업생에게는 무장경찰 소위 경찰계급을 수여한다.

(라) 전공소개

공안해경학교의 전공은 항해기술전공(해경합정지휘)를 비롯 기관공학전공(전기기계 기술지휘), 전자정보공학전공(해경정보지휘), 전자과학과 기술전공(공안기밀), 변방합정 지휘전공, 컴퓨터 응용기술전공, 변방통신지휘전공, 부대보급관리전공, 항해기술전공(특수목적위탁 전

14) 1本是 명문대학교, 2本是 보통대학교, 3本是 전문대학교이다.

공, 이과, 전공), 기관공학기술(특수목적위탁 전공, 이과, 전공) 등 10개 전공이 있다.

4.4 시사점

해양경찰에 대해 여러 해상치안 기관들의 업무 및 교육현황을 살펴보았다. 현재 해양경찰의 교육과 비교 감안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강화이다. 해양경찰문화에서 성장한 해양경찰관이 최고 지휘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미래비전, 핵심가치, 자긍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해양경찰의 혼과 가치 그리고 노하우 전수를 위한 교육중심의 강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미래지향적인 교육체계를 개발하여야 한다. 즉, 해양경찰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교육이어야 하고, 해양종합현장 행정기구에 대비한 교육이어야 한다. 특히, 외국의 해양경찰 교육기관에서 고찰했듯이 우리나라의 해양경찰 교육기간은 단기간(9개월/1년)임을 인식할 수 있다. 향후 신입 교육생들의 교육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시켜야 한다. 이 같은 교육기간의 연장은 해양경찰의 업무수행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의 포괄적인 기능수행이다. 기능면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연안경비대는 해상치안, 수색구조, 항로표지, 쇄빙선 운영, 내륙수로, 교통관리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해상보안청보다는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해양경찰의 기능을 미국의 연안경비대와 같이 포괄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점차적으로 해양경찰의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업무의 특수성을 비롯 교육환경적인 특성 그리고 교육수요자 측면의 특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해양경찰 교육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앞서 조사한 미국해양경비대(USCG) 및 일본해상보안청(JCG)의 임무와 우리의 해양경비안전본부(KCG)의 임무를 비교해 보면 USCG는 KCG 업무를 비롯하여 수로관리와 선박 및 선원관리, 그리고 군사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는 우리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업무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USCG는 직접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CG 역시

해양수산부 업무인 해양조사를 포함한 업무를 가지고 있어 KCG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해상치안활동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이나 일본 등은 이미 자체 대학교 시스템을 통해 전문 해양인을 양성하고 있으므로 동북아시아의 해양주권의 경쟁구도 하에서 신입 직원의 선발과 교육은 장기적으로 해양주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해양인 정신과 전문성을 겸비한 투철한 해양구조·경비 인력 양성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확고한 기틀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Table 17 해양경비안전본부 및 해양선진국 교육기관(USCG 및 JCG)의 교육체제 비교

구 분	USCG	JCG	KCG
주요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 • 해양환경 • 해양보안 • 해상경비 • 법집행 • 해상교통관리 • 수로관리 • 선박 및 선원관리 • 군사업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 • 해양환경 • 해양보안 • 해상경비 • 법집행 • 해상교통관리 • 해양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안전 • 해양환경 • 해양보안 • 해상경비 • 법집행 • 해상교통관리 등
간부(사관) 양성기관	사관학교(4년)	대학교(4년)	단기양성(1년)
간부 교육내용	전공별 심화교육 및 장기 함정실습	전공별 심화교육 및 장기 승선실습	공통과목 및 단기 함정실습
비간부 양성기관	신병훈련소(8주)	해상보안학교 (1-1.5년)	신입과정(1년)
비간부 교육내용	기초군사교육 및 직무교육	전공구분, 전공별 심화교육	전공(경과) 구분, 공통과목 80% 차지
현장교육(OJT)	주기적 함정근무	주기적 함정근무	-
지휘관교육	계급별 기본교육과 동일	계급별 기본교육과 동일	치안정책과정, 현장지휘관과정
계급별 기본교육	계급별 리더십교육	초임, 중견, 상급간부과정	경사~경정 계급별 기본교육
직무별 전문교육	심화과정	심화과정	심화과정
재난대응교육 (인명사고, 오염사고)	담당자 의무교육	임의교육	임의교육
교수진	자체교수요원 양성	자체교수요원 양성	-
특수훈련시설	항공학교, 잠수(해군교육장 이용)	항공학교, 수심40m 이하 잠수교육장	-

제 5 장 신임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전략

5.1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필요성

5.1.1 대외적 여건

우선 일본과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상황이다. 몇 년 전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입국시도 사건 또한 일본 내부 결속을 위한 정치적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일본 내 반한류(反韓流)로 포장된 일본우익들의 정서적 헤게모니는 독도 EEZ 수역에 대한 마찰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의 마찰문제가 있다. 이어도 부근 남방해역에 매년 10여회 이상 중국함정이 출현하였고, 그 빈도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해양 영토 확장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남방해역에 대한 출몰을 통하여 유사시 자국 영해로 주장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중국의 계획대로 2-3대의 항공모함이 진수된다면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해양영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韓·中·日 3국이 연접해 있는 동북아 해역은 국가 간 갈등의 최전방으로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경우 집단화되고 흉포화 되어 가고 있다. 장기적으로 더욱 불안한 요소는 이어도 해역에도 중국 해경국 선박이 출몰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고, 점차 항공세력 역시 근접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적 대응책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및 日 순시선 순찰이 강화되어 있어 잠재적인 마찰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중국과 일본 양국은 해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데, 중국의 경우 2013년 7월 해양 분야 통합한 국가해양국 신설해 중국 해경의 함정과 인력을 급속히 충원하고 있고, 일본 역시 2013년 8월 해상보안청 장관에 해상보안대학교 출신자를 내정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1994년 UN해양법 발효로 해양활동 수역이 12해리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과 대륙붕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더불어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의 관할권이나 도서 영유권, 과학조사기관의 활동 등 인접국가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심화되고 있어 그 임무는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1) 대일본 - 독도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지리적으로 약 250만 년 전 신생대에 형성된 화산섬으로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Km 거리에 위치한다. 일본은 러일전쟁 시기인 1905년 내각회의 결정으로 시마네현(島根縣)¹⁵⁾ 고시를 통해 독도를 사마네현에 편입시켜 자국의 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며, 독도 주변의 우리나라 영해 외측 수역에 지속적으로 순시선을 보내는 등 국제 분쟁지역화를 기도하고 있다.

그렇기에 해경은 독도 영해에 5천 톤급을 비롯한 대형함정을 배치하며 해양주권 수호를 강화하였고, 강릉과 울릉도에 헬기 및 광역 초계기를 배치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Table 18 독도 근해 일본순시선 출현 현황 (2010년 ~ 2015년)

연도별	출현횟수(회)
2010	95
2011	93
2012	99
2013	100
2014	101
2015	100

출처 : 국민안전처 내부자료

(2) 대중국 - 이어도, 서해 불법조업 등

이어도는 우리나라 대륙붕으로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거리에 위치한 수중암초이다. 수중암초의 특성상 해수면으로부터 약 5m 아래에 잠겨 있어, 파도가 심할 때에만 그 모습을

15) 일본 혼슈(本州) 남서부에 있는 현으로,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시마네현 오키섬(隠岐諸島)에서 독도까지는 160km이다.

드러내며 우리나라는 1951년 국토 규명사업의 일환으로 이어도 탐사를 시작했다. 인근의 수역은 조기, 민어, 갈치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는 이른바 “황금어장”이며, 중국 및 동남아, 유럽으로 항해하는 주 항로가 인근을 통과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역이다.

이어도의 경우 중국 통다오 섬에서 247km 떨어져 있으며,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영유권 주장을 해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다. 2001년 한중어업협정 당시 이어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한국 정부는 뒤늦게 이어도를 공동수역으로 설정했고, 이어 2006년에는 한, 중 양국이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 섬이 아닌 만큼 영토분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합의를 함으로써 논란이 가라앉는 듯 했으나, 우리나라에서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며 논란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서해해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강력한 단속 및 나포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비롯, 2명의 경찰관 사망사고도 발생하였다.

해경은 이어도를 비롯한 서해해역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고 관할권 범위를 중국 측에 확고하게 인식시킨다는 방침아래 순찰 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항공 초계활동을 펼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인도양, 아프리카 주변해역에서의 해적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선박 플랫폼이 확보된다면 해양경찰이 해당 지역에서의 순찰활동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현재의 여건상 현지 활동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해양경찰은 관련 국가의 coast guard들과 국제항행로에서의 우리나라 선박선원에 대한 해상안전 확보 및 현지국과의 공조채널 강화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보활동을 플랫폼화하여 유관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Table 19 이어도 해역 중국국가세력 출현 현황 (2010년 ~ 2015년)

연도별	합 계	관공선	항공기
2010	16	6	10
2011	62	35	27
2012	61	25	36
2013	50	10	40
2014	46	8	38
2015	33	17	16

출처 : 국민안전처 내부자료

5.1.2 대내적 여건

대내적으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비롯하여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위기상황과 동·서해 NLL해상 도발 문제 그리고 중국 등 제 3국을 통한 탈북위장 간첩활동과 대남공작 등의 국가안보 위협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북관련 긴장상황은 언제나 또 다른 사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상시대비 태세가 요구된다. 더불어 국제항만·여객선을 통한 국제성 범죄 유입 및 밀수입 그리고 마약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주 5일제 근무제가 일반화되어 있고 여가활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 레저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해양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안전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LNG 온배수배출·화력발전소 건설 등은 관련 지역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해경 자체의 역량문제를 살펴보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관련 검문, 검색을 위한 선박 플랫폼이 요구되고, 치안 장비류(함정, 항공기, 통신, 안전 장구류 등 또한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상방제역량 또한 과거보다 신장되었으나 컨트롤타워 등의 재난방제 매뉴얼 및 총체적인 하드웨어 장비확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해경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바다체험캠프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바다에 대한 이해와 도전의식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피서철 안전한 물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는 어린이 물놀이 안전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 발맞추어 바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큰 상황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그동안 해왔던 해양경찰의 업무에 대해 큰 사고의 전환을 일으켰다.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의 신속한 투입이 늦어지는 등 해양경찰을 비롯한 재난안전인력의 전문성과 예산 부족 등의 현 대한민국의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초동대처가 부족했다는 사실에서 몸으로 배우고 숙달하는 강인한 해양경찰의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사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간부급 입직자들의 경우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지휘의 효율성 문제와 순경 입직자의 경우 고령으로 인해 현장경험이 풍부한 중견간부로 성장하기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된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점이라 판단된다.

5.2 해양경찰 교육시스템 개선

5.2.1 신입 과정의 체험형 과목 확대

처음 해양경찰로서의 자세와 임무를 배우기 위해 52주(특채 36주) 과정으로 4단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단계별 목표 설정 및 특성화 단계 도입으로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생 입장에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선마련이 필요해보인다.

'15. 9. 1 ~ 9. 10까지 10일간 신입교육 과정 227기 졸업생 252명 중 206명이 응답(81.7%)한 신입교육 운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법령(행정법, 형사법) 과목은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으므로 이보다는 특별법(수산어법, 낚시어선 관련 등) 위주의 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도 법령교육은 단순 조문 풀이가 아닌 시나리오 상황을 부여하여 어떤 법령을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 방식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불법외국어선을 단속하는 강의에서 레이더 식별, 채증, 원거리 추적, 단정운용, 등선, 진압, 상황보고 등 단순한 나열식 업무소개보다는 그 상황별 시나리오를 각각 작성하여 실제 불법외국어선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적용 가능한 법령 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의 기본인 업무포탈 및 문서작성 방법 교육시간 및 경무행정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실무에 직접적으로 겪지않는 단순 이론주입식 수업시간은 축소하되 현장인터뷰, 단속 현장, 훈련모습 등) 등 시각적 자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어선에서 운용중인 어구 분별 방법 등을 교육할 경우 교체가 아닌 실제 모형으로 교육한다면 오랫동안 각인시킬 수 있다.

그리고 특채가 아닌 공채인 이상 선박을 직접 탑승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항해나 기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응급구조 등도 마찬가지이다.

Table 20 신입과정 졸업생 대상 확대 희망 상위 10과목 조사 결과

순위	과 목 명	순위	과 목 명
1	보고서 작성 및 업무포탈	6	수상인명구조 실습
2	경무행정	7	응급구조(실습)
3	관서실습	8	수사실무
4	항해/기관시뮬레이션(실습)	9	해상안전 및 교통레저
5	훈련함 실습	10	컴퓨터활용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선장이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교육 받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소방, 항해 실전모의 훈련, 인력 관리가 있다. 이들의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방교육은 화재 예방 및 진압기술, 화재진압 지휘, 통제 체계 조직 방법, 화재 종류별로 쓰이는 화학물질에 대한 이해, 모형 배서 실전과 같은 훈련 등이 있다.

항해 실전 모의훈련으로는 악천후, 조난, 전복, 침몰, 충돌 회피 등 극한 상황 훈련이 있으며 인력 관리로는 비상상황에서 승객 대하는 요령, 승객 통제, 통솔하는 방법, 승객과 선원에 대한 효과적인 소통법 등이 있다. 이들의 내용을 분석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재편성하여 신입교육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결국 교육생들이 실무에 가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의 보호자이기에 국민을 위기 상황에서 통제, 통솔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체험적인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평가에 있어서 단기간 과도한 평가는 교육집중력 저하되는 한 요인이 된다. 관서실습의 경우만 보더라도 6항목으로 나뉘어 평가되고 있고 훈련함의 경우 그보다 더 많은 평가항목이 있어 교육집중도가 저하되고 있다. 평가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좌식(객관식,

주관식) 평가는 지양하고 체험 위주의 반복을 통한 체득형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5.2.2 현장지휘역량 강화

경찰, 군인 등 위기관리에 있어 전문지식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리더십이다. 복잡한 위기상황에서 여러 사람과의 협동을 원활히 이끌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그동안 당연시만 여겨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명령, 지시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협력적 리더십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급별 기본과정이 직무수행 중심에서 단계별 지휘역량을 배양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 조직의 리더십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해군은 충무공리더십센터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해군(해병대 포함)의 정신교육 및 HRD를 담당하고 있으며, 단기장교와 병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간부는 최소 이곳을 모두 거치며 정신교육 및 리더십, 인성교육 등을 받고 있다. 육군 역시 리더십센터, 공군의 보라매리더십센터가 있으며 경찰의 경찰교육원을 비롯, 미 해안경비대는 캘리포니아주 Petaluma에 위치한 훈련센터를 통해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에서 사고발생시 모든 재난기관을 총괄하는 해양경찰은 아직 전문적인 현장지휘역량 교육이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리더십 교육 강화를 위해 재직자에 대한 계급별 기본교육을 현재의 계급제가 아닌 해양경찰 직무의 특성에 맞춘 단계별 교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사, 경위, 경감, 경정 등 각 계급에서 필요한 기본교육은 2~3주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차상위 계급으로의 승진을 위한 필요적 성격의 의무적인 교육이라는 위치에 머물고 있고 그 내용도 각 계급별로 차별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초급(초급 지휘관과정), 중급(중급 지휘관과정), 고급(고급 지휘관과정)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현장지휘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기본 교육체계를 갖추어 교육내용을 내실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현재 경사 계급의 기본교육은 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순경 계급에서 경사 계급까지의 진급이 과거에 비해 비교적 빨리 진행되고 있어 경사 계급에서 필요한 재교육 수요가 많지 않고, 해당 계급이 수행하는 직무의 차별성을 따져볼 때에도 교육원에 머물면서 실시하는 별도의 기본교육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진다.

경위 계급을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을 초급 지휘관과정으로, 경감 계급을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을 중급 지휘관과정으로, 경정 계급을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을 상급 지휘관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실제 해양경찰의 현장 직무 담당에서도 경위급은 소형정장을, 경감급은 중형정장이나 안전센터장을, 경정급은 대형정장을 맡고 있으므로 각 계급과 직무에 대한 기본교육을 연결함에 있어서도 적합성을 보일 수 있다.

초급 지휘관 계급부터 각 계급에 맞는 현장지휘역량을 단계적으로 갖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최상급의 현장 지휘관 역량강화 과정(총경급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교육의 기회를 순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교육구조의 마련이 가능하다. 현장에서의 지휘역량과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은 며칠간의 단기간 집중교육으로 갑자기 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맡은 직무에 따라 각 단계별 상황에 맞는 교육훈련 내용을 갖추고 기초부터 체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초급 지휘관과정 교육에는 기본교육에서 초급 간부로서 받아야 할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여기에 기초적인 현장 지휘관 교육과 상황처리 및 오염방제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까지 가미하여 운영함으로써, 초급 간부 시절부터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배양할 수 있다.

국가직무능력 표준제로 일반직은 과장급 승진에 역량평가를 도입하고 있고 사무관 승진에도 이를 도입하는 부처가 있으며, 실제 직무역량을 수행하고 1:1로 4~5시간 동안 평가를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양경찰도 계급에 따라 해당 기본교육과정을 마친 후 당해 계급에 상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통과하여야만 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면 자연스럽게 기본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직원들도 기초부터 현장 지휘능력을 갖추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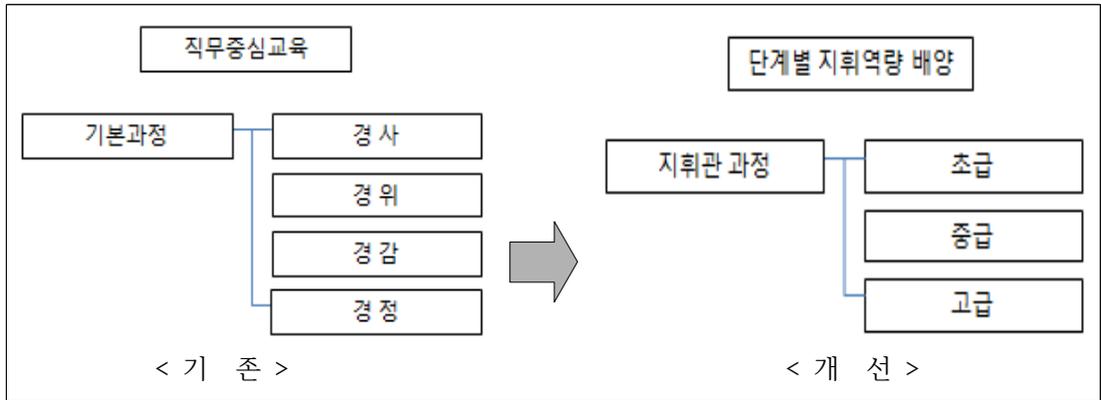


Fig. 19 리더십 교육 강화 프로그램 전환

Table 21 리더십 강화 교육 구분

구분	과정 구분		
	기본교육	지휘역량	오염방제
초급 지휘관 과정	소양, 법령이해, 현장실무, 행정실무 등	현장대응능력, 상황대응(이론/훈련), 리더십(팀워크, BRM) 등	오염방제 개론
중급 지휘관 과정	소양, 행정실무, 직무역량강화 등	현장대응능력, 상황대응(이론/훈련), 리더십(팀워크, BRM), 함정실습 등	IMO Level 2
고급 지휘관 과정	언론대응, 정책수립, 사례발표 등	상황대응, 조직관리, 함정실습 등	-

계급별 기본교육에 현장지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지휘관과정의 교육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법령 하에서 그대로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해양경찰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경정·경감·경위 및 경사는 해당 계급별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차상위 계급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급의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현재의 기본교육의 내용을 수정하고 각 계급에서 받아야 할 기본교육

에다가 직책별로 그 능력에 맞는 지휘역량 강화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

5.2.3 내부 전문가 양성

어느 조직마다 전문가를 두기 위해서는 2가지의 인사채용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 그분야의 경력자를 채용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내부직원 중에서 지원자를 뽑아 교육시키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경력자를 바로 구한다는 점과 교육비용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조직에 대한 애정심, 사명감 부족 등으로 중간에 그만둘 확률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내부직원을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만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동안 해양경찰은 항공기조종사 경우 항공기 면허를 취득 후 일정 비행시간을 채운 비행조종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해왔으나, 비행시간을 더 채우고 나온 조건으로 민간항공회사로 이직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항공운용에 큰 걸림돌이 되어 왔었다. 이에 최근 몇 년 전부터 매년 희망자를 대상으로 2~3명의 내부직원을 뽑아 1년간의 항공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자체 항공조종사를 양성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해양사고 대응특성상 선박항해·기관 등 선박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만큼 지식을 가진 내부직원이 항공조종사가 됨으로서 구조 역량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의 해경 업무에 있어 특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로는 국제법, 잠수사, 구조사 등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듯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경우에는 외국어, 잠수사, 구조사 등을 내부직원 대상으로 전문가를 키우는데 적극적인 모습이다.

외국과 상대해야 할 일이 많은 해경 입장에서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 우리나라 인근 국가에 대한 언어와 국제법 능통자가 지속적으로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 채용 시스템에서는 그런 인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행여 그 언어의 능통자를 채용한다 해도 바다의 특성과 해양법, 해사영어 등 바다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긴급상황 발생시 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함정근무 등 해양을 잘 아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외국어가 능통하고 국제법을 잘 아는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사명감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잠수사,

특수구조사 등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해난사고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해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항상 냉정한 판단력과 반드시 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요구된다.

보통 잠수사, 구조사 채용의 경우 잠수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경의 경우 해군UDT, SSU, 해병수색대대, 육군 특공대 출신, 잠수자격증 보유자 등이 많다. 그러나 이들이 했던 업무는 공격용, 전투용, 건설 등 업무로의 잠수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구조를 위한 잠수와는 일부 거리가 있다.

또한 40대 이후가 되면 잠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다수의 젊은 잠수사들이 공급이 되어야 하지만 이 역시 채용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체력테스트를 통과한 내부의 젊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조에 필요한 잠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부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다.

Table 22 現 운영 중인 한·일 구조사 임무 구분

구분	구조사 종류	임 무
일본	특수구조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수 해난사고시 인명, 재산 구조 (화재·위험물까지 담당)
	기동구조사(항공)	헬기와 연계한 인명구조 등 신속한 인명구조
	잠수사(함정)	잠수지정선에 탑승, 잠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난사고 시 인명, 재산의 구조
한국	중앙특수구조단 (항공대 구조사 포함)	일본 특수구조대와 기동구조사 포함한 조직으로 신속한 인명구조 및 고도의 지식 요하는 특수 해난사고까지 포함
	122구조대	각 해경서별 편성 운영
	잠수사	대형함정에 탑승, 잠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난사고 시 인명, 재산의 구조 등 일본 잠수사와 같은 임무 수행

이외에도 일부의 잠수능력 보유를 가진 직원배치 및 교육도 필요하다. 경비함정별로 10~30명 정도의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잠수능력이 보유하는 직원들은 중·대형 함정 위주로 배치되어 있으며 소형 함정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연안에서의 긴급상황 발생시 소형 함정이 제일 먼저 투입하면서도 구조능력이 대형함정에 비해 제한적이다 보니 소형함정에도 자체 교육시켜 잠수능력 가진 직원의 배치가 요구된다.

순환근무로 인해 인사발령이 매년 1년마다 있어 잠수능력 가진 함정직원이 사무실이나 안전센터로 배치되면 또 그 함정에는 잠수능력 가진 직원이 없어진다. 따라서 매년 인사발령시마다 함정별로 잠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여 단기간 교육시켜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서 잠수능력은 깊이 요구될 필요가 없다. 전문구조사가 직접 대응하기 전까지 초기 수색하는데 있어서의 기본대응능력이기때문에 수영가능자의 경우 단기간 교육(1~2달)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① 국내 사례

- (소방) ‘특별채용’ 뿐 아니라 ‘자체 인명구조사* 교육’ 을 수료했거나, 시험에 합격한 직원에게 「119구조대 근무」 자격 부여
- (해군 SSU) 모병 및 현역 근무자 대상 연 1회 100명 선발, 12주(병) 또는 26주(부사관) 훈련을 거쳐 해난구조대 또는 구조함 배치(15년 수료자 65명)
 - * SSU : 해상·수로 장애물 제거, 선체인양 임무 등 수행, 국내 유일의 포화잠수 능력 보유

② 해외 사례

- (일본 해상보안청) 직원 중 잠영, 수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연 2회 32명 선발, 7주간 자체양성 교육 후 항공구조사 또는 함정구난사 배치
 - 최장 5년 구조대 근무 후 원 직별 보직 배치, 희망시 5년 연장 근무 가능

기간/장소	훈련주기/인원	자격조건	구조대 구성
7주 / 해상보안학교	연 2회 / 각 16명	30세 미만, 잠영 23m 수영 300m	100% 자체 양성

- ※ 잠수물리 등 이론 교육 후 실내수영, 전복선박 내 인명구조, 수중·항공구조 훈련
- (미국 코스트가드) 일반인 중 체력검정 평가 등을 거쳐 선발하여 특수구조사로 양성하는 체계로 연 3회 72명 선발, 18주 교육 후 배치

Fig. 20 구조 관련 내부 전문가 양성 국내·외 사례

5.2.4 교육 교류 운영 확대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자체 인력 양성이라는 소기의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으로부터의 해양관련 위탁교육을 담당하는 해양교육의 허브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즉, 경찰,

소방, 해양 관련 민간기업 등에서 외부 교육생을 위탁받아 해양관련 교육 인력을 비롯하여 유관기관의 상호협력으로 각 기관별 전문교육까지 확대할 경우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상호업무 이해도 상승 등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또한 해양경찰 직무상 인접한 국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이 꼭 필요하다. 교육원이 장차 해양경찰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게 된다면 해양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전담하여야 한다. 교육원의 부설기관으로 국제화센터 또는 국제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외국어 교육과 함께 외국 해상치안교육기관과의 교류도 담당하게 한다.

전임교원제도 편성에 필요한 영어, 중국어의 전임 외국어 교수와 함께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에 대한 외국어 교육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계약직 외국인 교수를 임명할 수 있고, 해양경찰에서 외국으로 파견한 영사나 국비 유학생들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외국어 교육을 전담하게 할 수도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해상 관련 국제 네트워킹의 첨병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미 세계적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국제 네트워킹을 위해 적극 운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건이다. 미국과 일본은 국제 네트워킹 형성과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 향후 이 부분을 적극 진행시킬 필요성이 매우 높다.

현재 제한적으로나마 KOICA의 위탁교육으로 아시아 해상치안기관 관계자들을 초빙하여 약 2주간 교육시켜주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는 있으나 짧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해경의 역할과 업무를 소개하고 구조 관련 일부 교육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 부분에 있어 가장 앞서 있는 조직은 미국 연안경비대 사관학교로서 국제 파견 훈련팀(Mobile Education&Training Team, METT)을 상시 운용하고 있다. 연간 15~20개국을 방문 교육하는 해외임시파견 기동훈련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해상법집행, 수색구조 위기대응 및 보수 관련 교육 진행하고 있다.

Table 23 미국 연안경비대 사관학교의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국제파견 훈련팀	15~20개국을 방문 교육하는 해외임시파견 기동훈련팀	파견국에서 해상법집행, 수색구조 위기대응 및 보수 관련 교육 진행
공무원 대상 국제교육 훈련 프로그램	내외국인 혼합과정 (연간 150명)	리더십, 수색구조 해양법집행, 해양안전, 어업 보호, 전술작전훈련 등을 교육함
	외국인 전담과정 (100명, 15주 과정)	국제위기대응과정, 국제수색구조 설계자과정, 국제검문검색과정 등이 있음

<Table 27>는 미국 연안경비대 사관학교의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을 일괄한 것으로 각국 공무원 교육생 대상 국제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크게 내·외국인 혼합과정(연간 150명)과 외국인 전담과정(연간 100명) 국제 교육 프로그램 내에 총 80여 과정이 운영 중에 있고, 국제위기대응과정, 국제수색구조설계자과정, 국제검문검색과정 등 다양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의 지원사업으로 아시아 해상치안기관 관계자 연수 및 자체 직원들을 동남아시아 관련기관에 파견을 보내고 있다.

즉,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연안경비청(PCG)에 해상보안행정 전반에 관한 고문(adviser) 자격으로 해상보안청 전문가를 파견할 뿐 아니라 필리핀 연안경비청 직원들을 일본 해상보안 학교로 초청하여 제압술지도자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선박교통서비스(VTS)에 해상보안관 파견을 비롯하여 아시아 및 아프리카 해상치안기관들에 대한 해상안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 해양치안기관과의 교육 프로그램 협력은 물론, 인근 아시아 치안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초빙하여 교육 연수 등을 통해 국제네트워킹을 형성함으로써 해양 안전의 협력을 이루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이처럼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체계가 갖추어지면 필연적으로 외국 해양경찰 교육기관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므로 국제화센터에서 교육기관 간의 상호 교류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훈련함의 해외실습훈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훈련함을 통한 교육생들의 훈련 및 해양경찰 교육기관 간의 교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교육원 교수요원 및 장차 전임교원들의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이나 해양경찰관의 외국 파견 섭외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5.2.5 교육 시설 확충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수색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원 부지를 활용한 심해잠수 훈련 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조기 예산 산출 및 확보, 설계 자문 등을 통한 심해잠수풀의 단계적 설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육원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의 교육생 수를 산정하여 수용가능 범위 내에서 다양하고 충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과과정 배치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심해잠수풀을 설치하면, 잠수인력 자체 양성 및 체계적 훈련 제공을 통하여 특수상황 잠수 구조역량 향상을 꾀하고, 해역별 특성을 갖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민간 산업 잠수자격자에 대한 정기교육과 합동 구조훈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리함으로써 비상시 민간 잠수자원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잠수 장비, 기술 및 의학적 연구(잠수병)와 같은 구조잠수 전문 연구 개발을 수행하여 잠수분야의 독보적 기술력 및 전문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향후 국민체험, 국제과정, 산업잠수 자격 시험장 등으로 확대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항공분야의 전문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해상사고의 경우 함정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역량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원에는 항공 구조를 위한 시설이 미흡한 상태이다.

민간항공사의 구조교육시설 및 해외 관련기관의 항공 관련 분야의 시설들을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 및 시설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경찰, 소방, 산림청 등 항공기를 운영하는 유관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항공구조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제 6 장 결 론

선진사회는 안전에 성장 못지않은 중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일상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후진국들은 이런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의 사다리를 오르게 된다. 우리도 과거 많은 국민의 희생 위에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 때로는 독일인들이 들어가기 두려워하는 깊은 지하탄광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냈고, 월남전에서는 5000명이 넘는 꽃다운 생명들이 돌아오지 못했다. 그렇게 역사의 강이 흘러와 오늘의 한국이 이뤄져 온 것이다. 지금도 한 해 5000명이 넘는 생명들이 교통사고로 길 위에서 지고 있는 이는 인구 대비, 차량 수 대비 선진국들의 서너 배가 넘는 수치다. 그래도 10년전 7000명에 비하면 나아지고 있다. 더 좋은 사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만만찮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처럼 안전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바다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은 많은 비용이 드는 함정운용 및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해 해양구조 능력을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양관련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의 특성 상 법학·행정학 등을 포괄하는 경찰관 기본소양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이 부분은 해양경찰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직능이 함정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해양경찰만의 특성이기도 하다. 즉, 육상경찰과는 달리 외국 선박 및 중국과 일본의 해양경찰세력들과 직접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평상시에는 전시효과(exhibition effect)를 보여주고 작전 수행 중에는 해양에서의 주권보호와 안전관리 및 경계·치안 등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해양경찰의 고유 임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은 향후 국제적으로 대두되는 해적 문제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특수성이 부여되는 상황이다. 이는 곧 바다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전문교육뿐만이 아니라 외국어 및 국제법 및 해상 특수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시한다. 안전을 비롯하여 무력 상황까지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개개인들의 역량강화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양경찰의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과정의 체험형 과목의 교육 확대이다. 단순 조문 풀이의 법령교육이 아니라 실

제 시나리오 상황을 부여 하여 어떤 법령을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지향형 교육이 요구된다. 행정인 기본인 문서작성 방법 및 경무행정에 관한 교육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신입들은 실무에 서무 업무부터 시작하므로 업무포털 등 실질적인 행정의 교육도 요구된다.

둘째, 위기관리에 대처할 수 있는 현장지휘역량 강화이다. 복잡한 위기상황에서 여러 사람과의 협동을 원활히 이끌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면서도 그동안 당연시만 여겨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명령, 지시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협력적 리더십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급별 기본과정이 직무수행 중심에서 단계별 지휘역량을 배양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내부전문가의 양성 확대이다. 해경 업무에 있어 특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로는 항공구조중사를 비롯해 국제법, 구조사 등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듯이 내부직원 대상으로 특수전문가를 키우는데 적극적이다. 해상에서의 범집행 총괄기관으로서 해상치안과, 경비, 구조 등 지속적인 내부전문가 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 교류 운영 확대이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자체 인력 양성이라는 소기의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으로부터의 해양관련 위탁교육을 담당하는 해양교육의 허브로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즉, 경찰, 소방, 해양 관련 민간기업 뿐 아니라 해외 해상치안기관 등에서 교육생을 위탁받아 해양관련 교육 인력을 비롯하여 유관기관의 상호협력으로 각 기관별 전문교육까지 확대할 경우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상호업무 이해도 상승 등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해잠수폴 같은 교육 시설 확충이다. 수색구조능력 강화를 위해 심해잠수폴 시설로 잠수인력 자체 양성 및 체계적 훈련 제공을 통하여 특수상황 잠수 구조역량 향상을 꾀하고, 해역별 특성을 갖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민간 산업 잠수자격자에 대한 정기교육과 합동 구조훈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리함으로써 비상시 민간 잠수자원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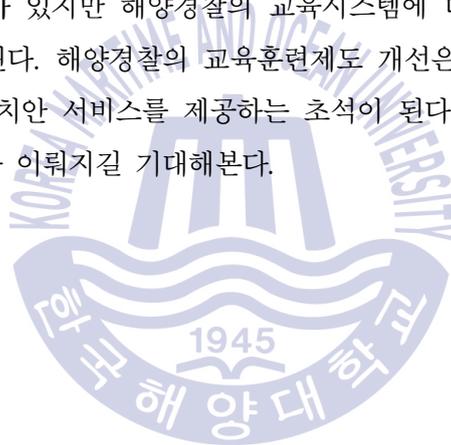
장기적으로 잠수 장비, 기술 및 의학적 연구(잠수병)와 같은 구조잠수 전문 연구 개발을 수행하여 잠수분야의 독보적 기술력 및 전문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향후 국민체험, 국제과정, 산업잠수 자격 시험장 등으로 확대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해상치안 위주의 업무에서 해상구조 위주로 확대된 만큼 이를 반영한 해양경찰의 교육시스템 개선에 대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연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첫째, 본 연구는 유관기관들의 사례발굴에 대해 미국, 일본 등 해외 해상치안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더 다양한 사례연구 파악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국내 유관기관인 경찰 및 소방기관을 비롯해 더 많은 해외 기관들의 사례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둘째, 설문조사의 부족성이다. 사례위주로 작성하다보니 실질적인 적용으로 인한 만족도, 관심도 등의 영향을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심도 있는 검증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가 이러한 한계가 있지만 해양경찰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해양경찰의 교육훈련제도 개선은 해양경찰의 자질 향상과 함께 국민에게 더 나은 해상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석이 된다. 향후 연구에서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된 연구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김성겸(2015), 「해양경찰의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강성철 외 4인(2011), 「새 인사행정론(전정7판)」 (대영문화사), pp.296
- 국민안전처, 「2016 국민안전처 통계연보」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pss.go.kr/>
- 김용환(2005), 「해양경찰 교육훈련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종수(2007), 「자치경찰의 신규 임용 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노호래(2013), 「해양경찰 신입교육훈련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권 제2호 통권 제51호, pp.113~153
- 노호래(2013),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2권 제4호 통권 제53호, pp.38~74
-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홈페이지, <http://www.uscg.mil/>
- 박동서(2001), 「인사행정론(제5전정판)」 (법문사) pp.21~23
- 배철수(2014), 「한국신임경찰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현기(2012), 「경찰인사관리론(제3판)」 (법문사) pp.186
- 유민봉(2005), 「한국 인사행정론」 (박영사) pp.215
- 윤종휘, 국승기, 이은방, 임재동, 고성정(2003), 「한국해양경찰 교육제도의 개선에 관

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9권 제1호 통권 제18호 pp.79~87

이상열(2011), 「해양경찰 교육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 8권 제3호, pp.25~46

이재승, 이완희, 문준섭(2013), 「미 해안경비대의 고찰을 통한 한국 해양경찰의 제도 적 개선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제36호

이황우 외 2인(2014), 「경찰인사행정론(제4판)」(법문사) pp.144~146

이창환(2008), 「경찰교육훈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일본 해상보안청 홈페이지, <http://kaiho.mlit.go.jp/>

일본해안청 2013 일본해상보안청 백서(번역본)

일본해안청 2014 일본해상보안청 백서(번역본)

임형록(2014), 정책보고서 「해양경찰 인력양성 체계 발전 방안」

정상만(2015), 정책보고서 「국민안전처 소속 교육기관 진단 및 발전 방안 연구」

한겨레신문(14.4.22일자), 「일본, 선박 전복 나흘뒤 구조시스템의 힘」

한국자치경찰연구원(2013), 정책보고서 「해양경찰학교 미래비전 설정에 대한 연구」

중앙일보(14.4.23일자), 「구명조끼 입고 선실 머물면 안돼, 뱃사람이면 아는 기초상식」

중앙일보(14.5.3일자), 「안전은 비용없이 얻어지지 않는다」